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2-31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방안 연구: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romotion Plan:
Enactment of special legislation

이성재 김재구 김시백 한국환



설립목적

전라북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과 여성정책 등에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 지역여성에 관한 연구 및 정책 대안의 모색
- 정부, 전라북도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의 각종 용역 수탁
- 연구 관련도서 및 간행물 출간
- 국내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및 정보 교류·협력

연구진 소개

이성재

전북대학교 공학박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재구

한양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한양대학교 국토도시개발정책연구소 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김시백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한국환

국립공주대학교 관광경영학석사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2-31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방안 연구: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romotion Plan:
Enactment of special legislation

이성재 김재구 김시백 한국환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책임 이성재 | 선임연구위원 | 연구총괄(1장, 2장, 4장, 5장)
공동연구 김재구 | 연구위원 | 새만금 관련 특례 검토(4장 3절)
김시백 | 연구위원 | 기업유치 관련 특례 검토 및 미래지표 작성(4장 45절)
한국환 | 전문연구위원 | 연구지원, 사례(3장)

자문위원 이동기 | 원광대학교 행정·언론학부 교수
전영옥 | 군산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 교수
황영준 | 국회 협력관

연구관리 코드 : 22JU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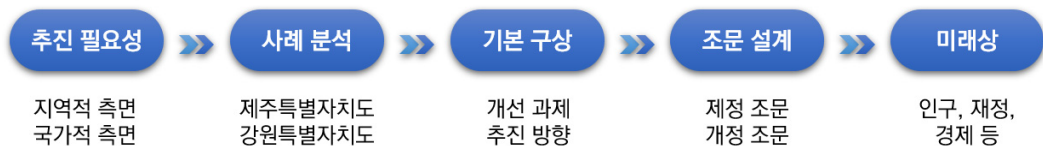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 목적 및 방법

■ 연구 배경 및 목적

- 초광역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에서 소외되어 4중 차별을 받고 있는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전환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전북의 독자권역 위상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
- 전북이 호남권 등 타 권역으로 편입되는 종속변수에서 탈피하여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전북의 특성에 기반한 독자적인 특화발전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필요성과 논리를 발굴하고, 제주·강원 특별법과 차별화할 수 있는 핵심 아젠다 설정과 제주·강원의 특별자치도법 분석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대응논리 마련

■ 연구 방법



2. 결론 및 정책 제언

■ 결론

-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필요성은 지역적 측면과 국가적 측면으로 검토하였으며, 지역적 측면은 전북의 인구 및 지역경제 위기로 인한 지방소멸 위험을 분석하고, 국가적 측면

은 정책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과 전북의 자립지원에 따른 역동적인 경제 선도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논리 개발

- 전북의 지역위기, 정책소외, 새만금 잠재력 등 여건을 고려 시 광역행정수요 대응, 정부·지방의 특별한 협력관계 설정, 새만금 효과의 내륙으로의 확산 등의 과제 도출
- 전북의 과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자치권 확대와 새만금과 연계한 신산업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 필요
- 핵심 아젠다는 국가 주도로 추진중인 새만금의 개발잠재력 및 미래가치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전북의 지정학적 강점 등을 고려하여 핵심 아젠다를 “동아시아 경제도시”로 설정
- 새만금과 관련된 특례 사항은 현재 계류중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보완하고, 도내 기타 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추진하는 Two-Track 방식 제안
- 新특별법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수정·보완하여 조문을 설계하였으며, 여당과 야당에서 함께 발의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명칭으로 2개의 법안 마련
- 향후 개정 조문은 자치권 분야와 개발특례 분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자치권 분야는 자치사무, 자치인사, 자치재정 등의 조문을 제시하고, 개발특례 분야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인·허가 의제, 토지수용 및 대부, 세금 및 부담금 감면과 관련된 조문 제시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시 2030년 변화될 미래상은 인구, 재정, 기업유치,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제시

■ 정책 제언

- 先 법률 제정 後 법률 개정, 강원과 공조를 통한 공조 대응, 전북특별자치도의 대내외 관계 서정, 추가 특례 발굴 등을 중심으로 정책 제언

차 례

CONTENTS

요약 i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체계 6

제2장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필요성

1. 지역적 필요성 11

2. 국가적 필요성 19

제3장 특별자치도 특별법 사례

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25

2.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35

3. 시사점 41

제4장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구상

1. 기본 구상 45

2. 핵심 아젠다 설정 47

3. 특별법 설계 48

4. 향후 개정 조문 56

5. 미래상 60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65
	2. 정책 제언	67
참고문헌	69
부 록	72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2-1] 전국 인구 증감	11
[표 2-2] 인구 전망	12
[표 2-3] 청년인구 순유출 현황	13
[표 2-4] 1인당 지역내 총생산	14
[표 2-5] 경제활동 인구 비율	16
[표 2-6] 청년 고용율	16
[표 2-7] 재정자립도	17
[표 2-8] 지방소멸위험	18
[표 2-9] 국토종합계획상 전북 권역	19
[표 3-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주요 내용	27
[표 3-2]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도개선 현황	29
[표 3-3]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단계별 제도개선 소요기간	30
[표 3-4]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상 적극 활용 내용	31
[표 3-5]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상 활용 미흡 내용	32
[표 3-6] 균형발전특별회계 추이	33
[표 3-7]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주요 지표 변화	34
[표 3-8] 강원(평화)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발의안 내용	37
[표 3-9]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주요 내용	39
[표 3-10] 특별자치단체 특별법 조문 변화	41
[표 4-1] 특별자치도 특별법안 비교	55
[표 4-2] 주요 미래 지표	61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초광역협력 비전·목표 및 전략	4
[그림 2-1] 전국 도부 인구 변화 및 전망	12
[그림 2-2] 합계출산율 변화	14
[그림 2-3] 1인당 지역내 총생산	15
[그림 2-4] 사업체수 및 사업체당 매출액	15
[그림 2-5] 경제활동 인구 비율	16
[그림 2-6] 청년 고용율	17
[그림 2-7] 재정자립도	17
[그림 2-8] 지방소멸위험(2000)	18
[그림 2-9] 지방소멸위험(2022)	18
[그림 4-1] 과제 및 방향	45
[그림 4-2] 기본 구상	46
[그림 4-3] 지정학적 잠재력	47
[그림 4-4] 국토공간 구조 잠재력	47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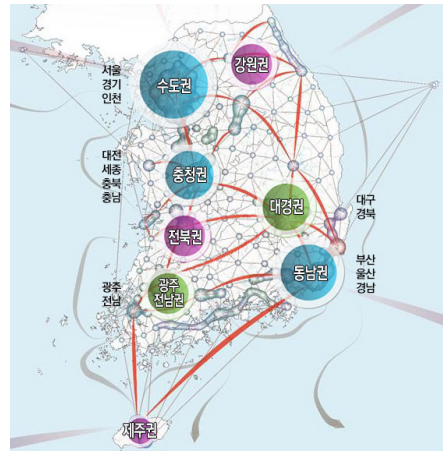
제 1 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지난 20여년간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해 지역에서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인접한 시도가 연계·협력해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광역시 중심의 초광역권을 추진 중

* 초광역권 : 부울경권(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대경권(대구광역시·경상북도),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광주전남권(광주광역시·전라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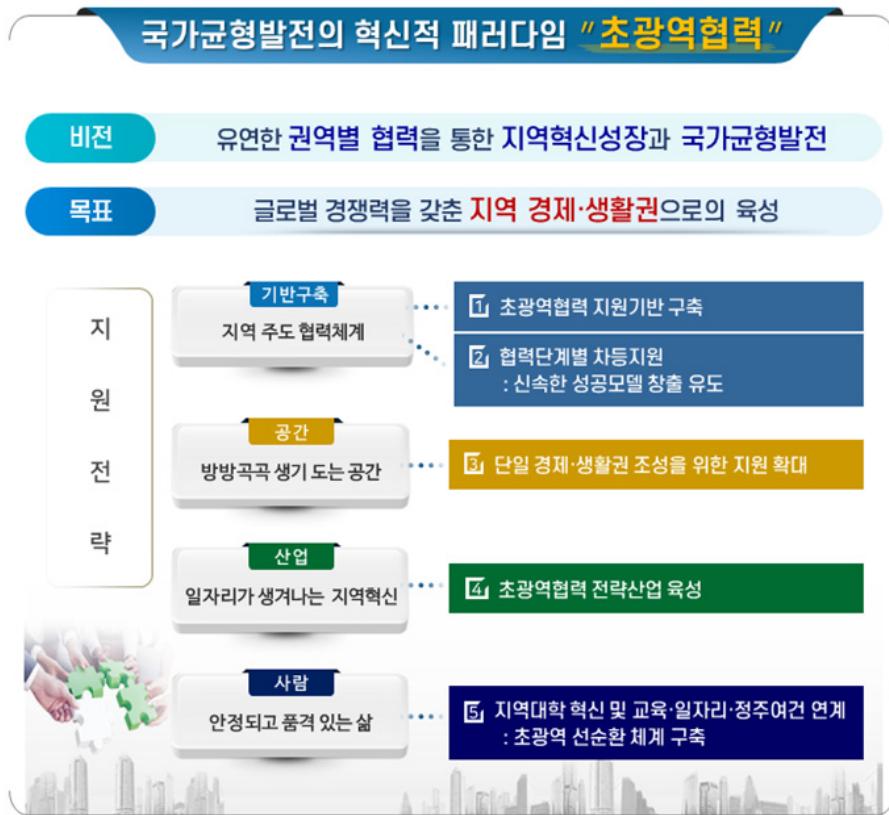


-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¹⁾와 지역 위기 문제 해결, 미래환경 대응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주도적 협력 촉진 등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21.10월)한 후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구성(‘21.11월), 균특법 개정(‘22.1월) 등 초광역 협력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재정지원 체계 등을 구축
 - 정부가 제시한 초광역협력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의 경쟁력 제고시키는 개념
 - 초광역협력 지원기반 구축을 위해 초광역협력의 법적근거 마련 및 계획 수립,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 구축,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 범정부 통합지원 추진체계 마련 등

1) 수도권 과밀화는 주거 및 교통혼잡 등 비효율을 가속화시키고 미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데 연소득 대비 주택 구입가격(‘20년 기준)은 전국 5.5배에 비해 수도권이 8.0배로 심각하고, 수도권 교통혼잡 비용은 전국 대비 52.2%인 35.4조로 추산(관계부처 합동, 2021.10.14.)

을 제시하고,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을 도입

- 공간 측면에서는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하고, 산업 분야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전략산업 선정·지원, 초광역권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충, 기업의 지역 투자 확대 환경 조성 등 초광역협력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사람 분야는 초광역 지역대학 혁신 및 지역인재 양성, 초광역권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초광역권 단위 지역 협업체계 및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등 지역대학 혁신 및 교육·일자리·정주여건 연계를 강조



자료 :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관계부처합동, 2021.10.14

[그림 1-1] 초광역협력 비전·목표 및 전략

- 반면 광역시가 부재한 전북은 그동안 독자권과 호남권 등 타 권역으로의 편입 등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국토 정책 추진과정에서 종속변수로 취급되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의 한계 발생

- 이에 전북은 민선 6기부터 전북 몫 찾기('17~), 강소권 특화발전전략('21~), 새정부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22) 등 독자권역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 진행 중
 - 전북은 민선 6기부터 전북 몫 찾기('17~), 강소권 특화발전전략('21~), 새정부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22) 등 독자권역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전북 몫 찾기는 전북자존시대, 전북 대도약 등의 정책진화를 통해 추진되었으며, 강소권 특화발전 전략은 초광역 협력 중장기 발전 정책으로 전환되고, 새만금 메가시티는 현 정부 대통령 전북공약으로 확정
- 광역 시·도 간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성할 수 있는 공간적 조건을 갖춘 지역에 비해 강원, 전북, 제주 등 강소권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제주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22.5.29)되어 전북은 4중 차별²⁾을 받고 있는 상황
- 또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국토발전 전략을 5+2(전북이 호남권으로 포함) 또는 5+3(전북 독자권역) 체제로 검토하고 향후 새롭게 출범하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 방향을 결정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초광역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에서 소외되어 4중 차별을 받고 있는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전환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전북의 독자권역 위상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전북이 호남권 등 타 권역으로 편입되는 종속변수에서 탈피하여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전북의 특성에 기반한 독자적인 특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

나. 연구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필요성과 논리를 발굴하고, 제주·강원 특별법과 차별화할 수 있는 핵심 아젠다 설정과 제주·강원의 특별자치도법 분석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대응논리 마련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

2) 수도권과 지방 차별, 영남과 호남 차별, 호남 내에서 광주·전남과 전북의 차별, 초광역메가시티 및 특별자치도에서 소외된 전북의 차별을 의미

2. 연구 내용 및 체계

가.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라북도 전역(새만금 포함)
- 내용적 범위 : 특별자치도 추진 필요성, 특별자치도 추진 사례 및 시사점, 특별법 제정 방향, 핵심 아젠다 설정, 특별법 설계, 미래상

나. 주요 연구 내용

1)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필요성

- 국가적 측면 : 초광역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 추진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당위성
- 지역적 측면 : 5+3 체제 구축을 통해 전북의 독자권역을 실현하고, 새만금 개발 효과를 활용해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확대할 수 있는 논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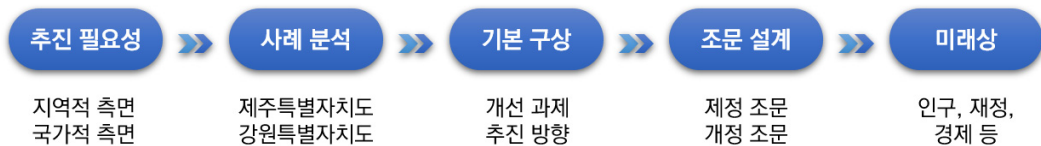
2) 특별자치도 특별법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1991년) 후 지방분권 및 투자촉진 등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법 개정 사항을 분석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2022년) 과정과 심의시 논의된 상임위 및 부처의 의견 등을 분석
- 시사점 도출 : 제주의 특별법 제정 후 변화 모습과 강원의 특별법 제정 사례 분석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 조문 구상 및 향후 개정 방향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

3)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 구상

- 기본 구상 : 전북의 여건을 고려해 과제를 개선하기 위한 추진방향 설정 및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본구상 검토
- 핵심 아젠다 설정 : 제주특별법 및 강원특별법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전북만의 핵심 아젠다 설정
- 특별법 설계 : 강원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최근 강원도에서 개정을 위해 발의한 내용, 기 발의된 특별법의 조항, 타 법률의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조문 설계
- 향후 개정 조문 검토 : 핵심 아젠다를 구현할 수 있는 전북형 개정 조문 검토
- 미래상 : 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인구, 재정, 경제 등 주요 분야의 미래상 전망

다. 연구 체계



〈특별자치도〉

- 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특별법에 의거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와 같은 행정 단위
- 특별자치도는 행정과 재정 부문에서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일부 이양 받고, 자자체가 행정체계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자치권이 확대되고 재정특례 지원이 가능
- 국내에서 특별자치 지위를 부여받아 운영되고 있는 행정구역은 제주특별자치도('06.7월), 세종특별자치시('12.7월), 강원특별자치도('23.6월 시행)



제 2 장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필요성

1. 지역적 필요성
2. 국가적 필요성



제 2 장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필요성

1. 지역적 필요성

가. 인구 위기

- 지난 20여년('00년~'21년) 동안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10.6%의 인구가 감소하여 '20년 약 200만 인구규모가 '21년 180만 미만으로 축소됨
- 인구감소 비율('00년~'21년)은 전국 17개 시도 중 3위이며, 도부(9개)에서는 2위 수준으로 심각함

[표 2-1] 전국 인구 증감

단위 : 명, %

구분	2000년	2021년	증감율('20~'21)
전국	47,732,558	51,638,809	8.18
서울특별시	10,311,314	9,509,458	-7.78
부산광역시	3,796,506	3,350,380	-11.75
대구광역시	2,524,253	2,385,412	-5.50
인천광역시	2,545,769	2,948,375	15.81
광주광역시	1,371,909	1,441,611	5.08
대전광역시	1,385,606	1,452,251	4.81
울산광역시	1,040,225	1,121,592	7.82
세종특별자치시	-	371,895	-
경기도	9,219,343	13,565,450	47.14
강원도	1,554,688	1,538,492	-1.04
충청북도	1,497,513	1,597,427	6.67
충청남도	1,921,604	2,119,257	10.29
전라북도	1,999,255	1,786,855	-10.62
전라남도	2,130,614	1,832,803	-13.98
경상북도	2,797,178	2,626,609	-6.10
경상남도	3,094,413	3,314,183	7.10
제주특별자치도	542,368	676,759	24.78

자료 :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 각년도

- 향후 20년간 장래 인구 전망 또한 수도권은 0.98% 증가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6.6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전북은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전북의 인구규모는 '21년 도부(9개) 6위에서 '40년 7위로 하락하여 강원과 제주 다음으로 인구규모가 작은 지자체로 축소될 전망이며, '40년 160만명 규모도 붕괴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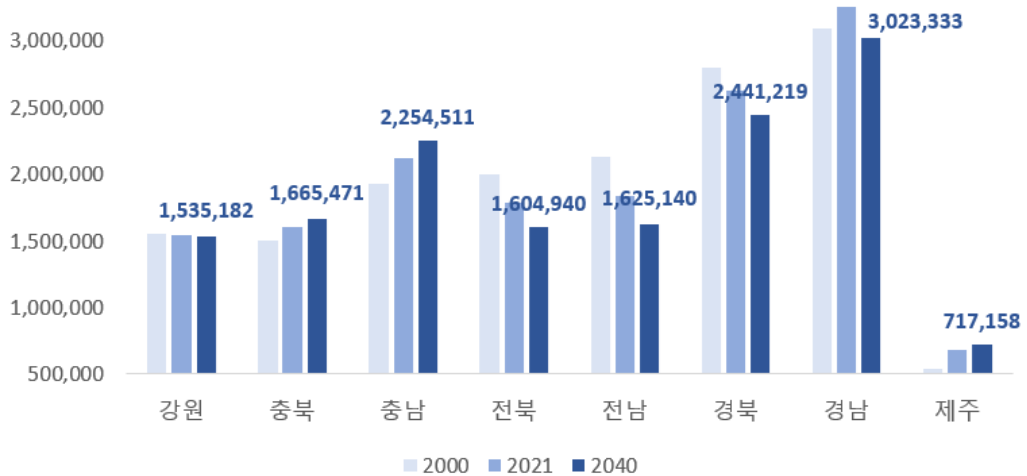
* 전북인구전망 : ('21년) 178만 → ('30년) 169만명 → ('40년) 160만명 → ('50년) 149만명

[표 2-2] 인구 전망

단위 : 명, %

구분	2021년	2030년	2040년	증감율('21~'40)
전국	51,638,809	51,199,019	50,193,281	-2.80
수도권	26,023,283	26,333,592	26,277,924	0.98
비수도권	25,615,526	24,865,427	23,915,357	-6.64
전라북도	1,786,855	1,690,585	1,604,940	-10.18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2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2

[그림 2-1] 전국 도부 인구 변화 및 전망

- 지역 활력에 증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청년인구의 20여 년('01년~'21년)간 순 유출 규모는 233,694명으로 '01년 청년인구 대비 43.1%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어 순 유출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2위로 심각한 수준임

- 청년인구 순유출 233,694명('01년~'21년)은 년 평균 11,128명, 월 평균 927명, 일 평균 30명 수준

[표 2-3] 청년인구 순유출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1년 청년인구	청년인구 순이동('01년~'21년)	'01년 대비 순이동 비율
서울특별시	13,702,472	79,395	0.6
부산광역시	3,252,808	-315,395	-9.7
대구광역시	1,082,825	-187,764	-17.3
인천광역시	734,368	97,853	13.3
광주광역시	718,211	-68,043	-9.5
대전광역시	412,514	-16,542	-4.0
울산광역시	412,173	-13,462	-3.3
세종특별자치시	21,085	69,497	329.6
경기도	2,654,820	1,382,340	52.1
강원도	411,950	-123,365	-29.9
충청북도	411,303	-61,372	-14.9
충청남도	502,215	-12,506	-2.5
전라북도	541,734	-233,694	-43.1
전라남도	530,447	-257,354	-48.5
경상북도	738,566	-224,293	-30.4
경상남도	846,484	-112,427	-13.3
제주특별자치도	154,239	-2,868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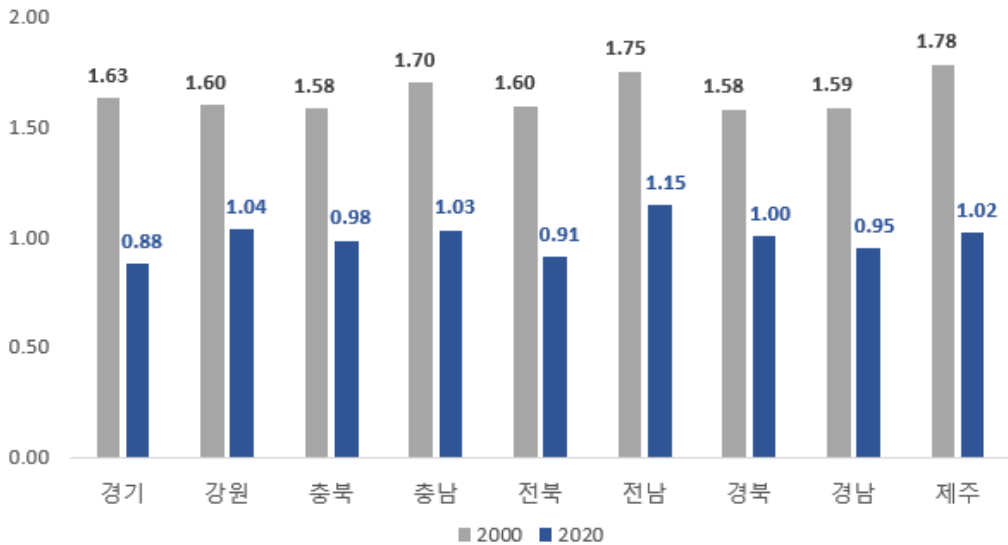
자료 :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 각년도

주 : 청년인구는 청년기본법상의 19세~34세로 설정, 세종시는 2012년부터 적용

- 통계청 자료에 따른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00년 1.595명에서 '20년 0.909명으로 감소하였는데 도부(9개) 기준 '00년 6위에서 '20년 8위로 하락하여 경기도 다음으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임

- '00년 대비 '20년 합계출산율은 전국의 경우 0.643명 하락, 광역시는 0.284명 하락, 광역도는 0.651명 하락한 반면, 전북은 0.686명 하락하여 전국·광역시·광역도 평균보다 하락율이 높아 인구위기 심각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

* 합계출산율 :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2

[그림 2-2] 합계출산율 변화

나. 지역경제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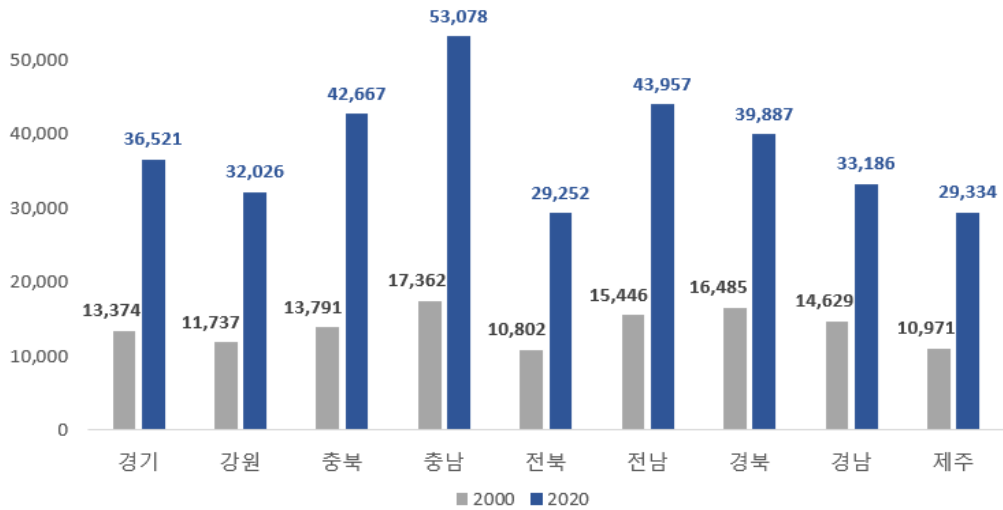
- 전북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액은 '00년과 '20년 기준 모두 강원도와 제주도보다 낮아 도부(9개)에서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도부 평균 대비 전북의 비중은 '00년 78.0%에서 '20년 77.5%로 하락함

[표 2-4] 1인당 지역내 총생산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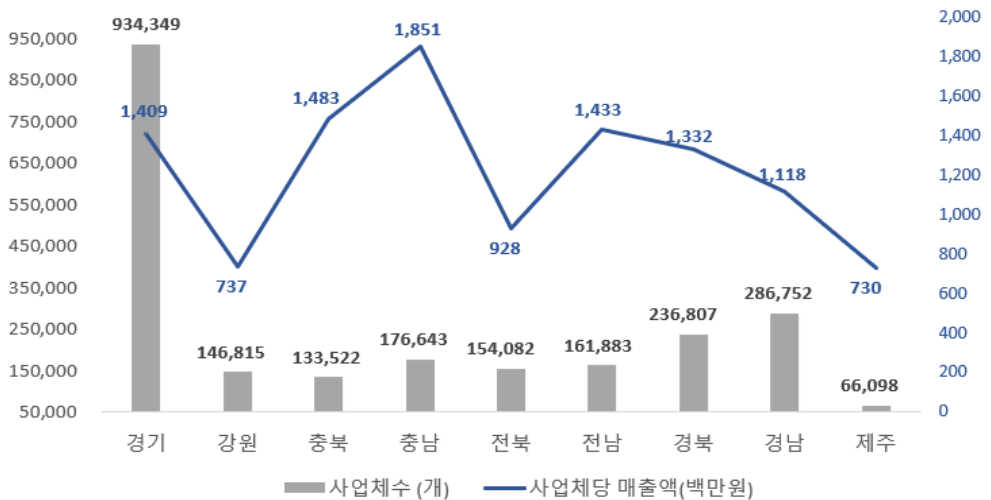
구분	평균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2000년	13,844	13,374	11,737	13,791	17,362	10,802	15,446	16,485	14,629	10,971
2020년	37,768	36,521	32,026	42,667	53,078	29,252	43,957	39,887	33,186	29,334
증감량	23,924	23,147	20,289	28,876	35,716	18,450	28,511	23,402	18,557	18,363

자료: 국가통계포털, 지역총소득, 각년도



[그림 2-3] 1인당 지역내 총생산

- '19년 도부(9개) 기준 전북의 사업체수는 6위인 반면,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당 매출액은 강원,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7위이며, 특히 사업체당 매출액은 충남의 50% 수준으로 사업체의 영세성이 심각함
- 충남 대비 전북의 사업체수 비중은 87.2%, 종사자수 비중은 73.9%, 매출액 비중은 43.7%, 사업체당 매출액 비중은 50.1%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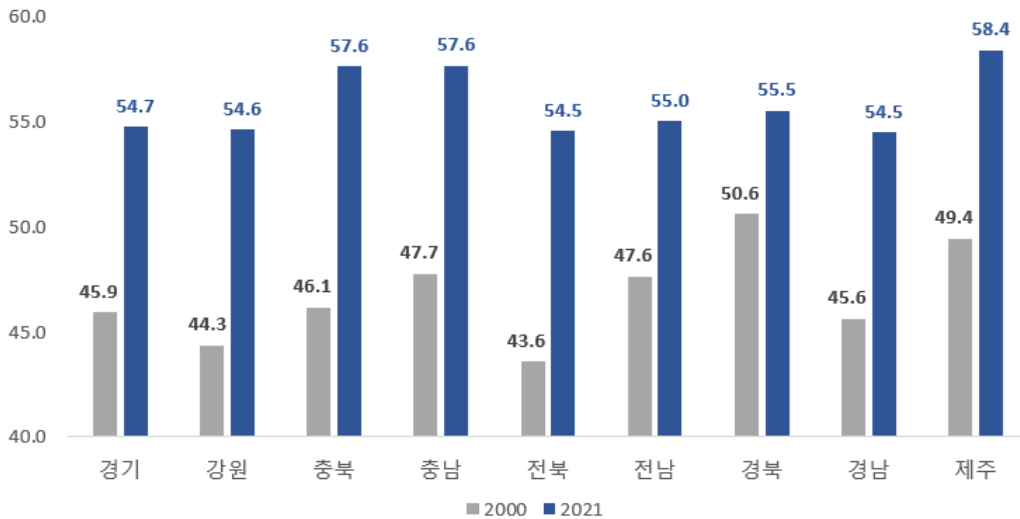
[그림 2-4] 사업체수 및 사업체당 매출액

- 전북의 총 인구 대비 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00년과 '21년 기준 모두 각 년도의 평균보다 낮고 도부(9개)에서 최하위로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표 2-5] 경제활동 인구 비율

구분	평균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2000년	46.5	45.9	44.3	46.1	47.7	43.6	47.6	50.6	45.6	49.4
2020년	55.2	54.7	54.6	57.6	57.6	54.5	55.0	55.5	54.5	58.4

자료 :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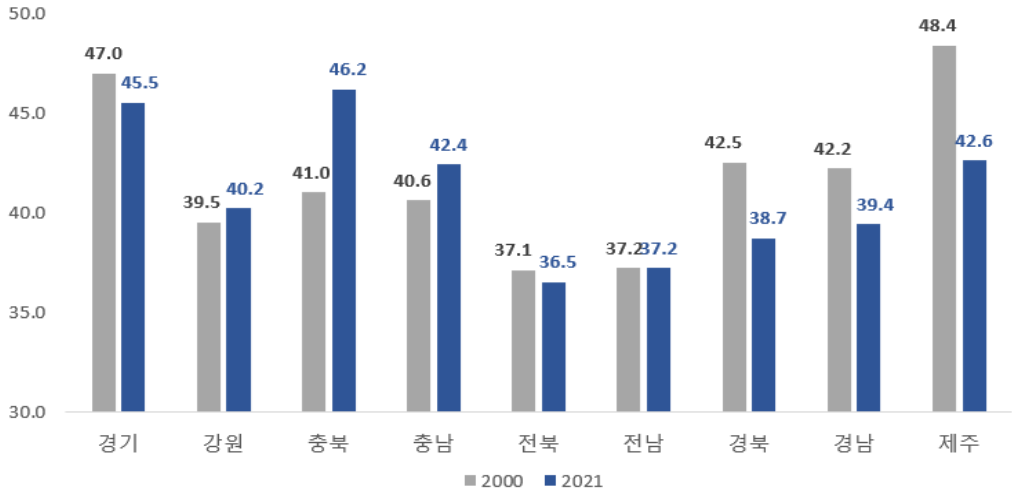
[그림 2-5] 경제활동 인구 비율

- 전북의 청년 고용률은 '00년과 '21년 기준 모두 각 년도의 평균보다 낮고 도부(9개)에서 최하위로 지역의 고용시장 또한 어려운 상황임

[표 2-6] 청년 고용률

구분	평균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2000년	41.7	47.0	39.5	41.0	40.6	37.1	37.2	42.5	42.2	48.4
2020년	41.0	45.5	40.2	46.2	42.4	36.5	37.2	38.7	39.4	42.6

자료 :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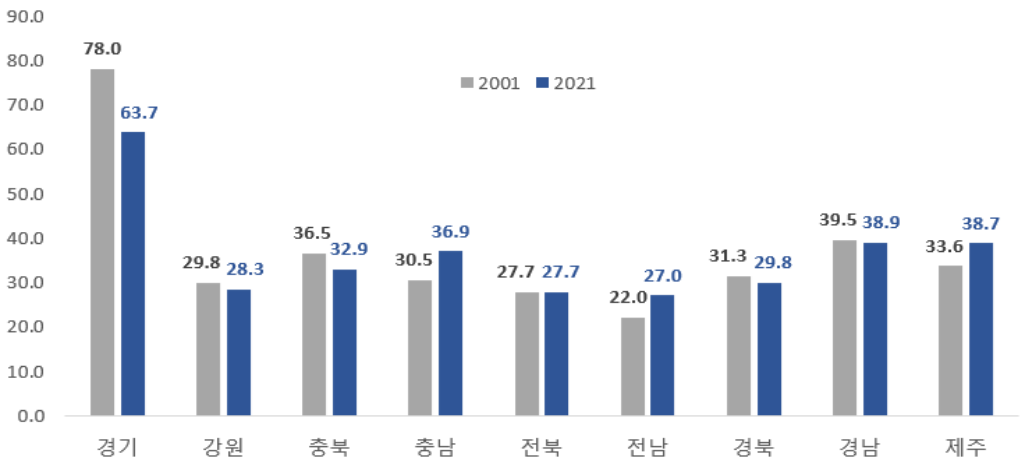
[그림 2-6] 청년 고용율

-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00년과 '21년 기준 모두 각 년도의 평균보다 낮고 도부(9개)에서 8위로 최하위권에 속해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열악한 상황임

[표 2-7] 재정자립도

구분	평균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2000년	36.5	78.0	29.8	36.5	30.5	27.7	22.0	31.3	39.5	33.6
2020년	36.0	63.7	28.3	32.9	36.9	27.7	27.0	29.8	38.9	38.7

자료 :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그림 2-7] 재정자립도

다. 지방소멸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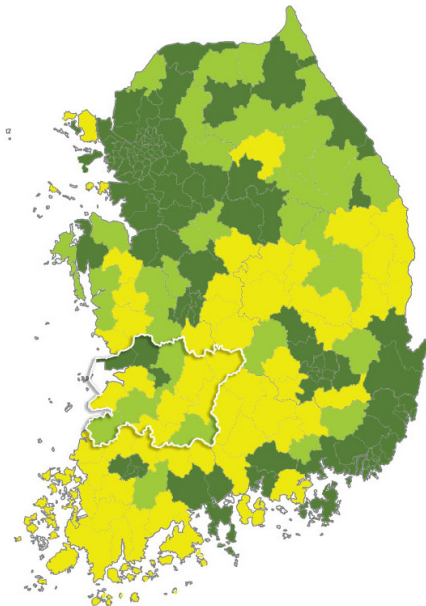
- 인구 위기 및 지역경제 위기 등으로 전북의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00년 주의단계 시군이 총 14개 시군 중 8개 시군으로 57.1% 수준이었지만, '22년에는 소멸위험 시군이 13개 시군으로 92.9%로 악화되어 전국에서 소멸위험 시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8] 지방소멸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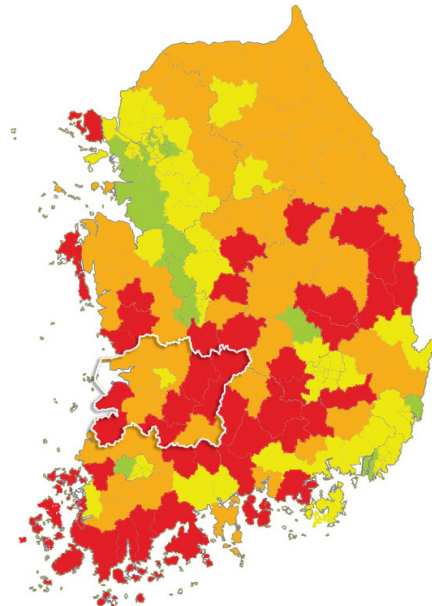
구분	시군(개)	2000년		2022년	
		주의단계	비율	소멸위험단계	비율
경기도	31	-	-	6	19.4
강원도	18	1	5.6	16	88.9
충청북도	11	4	36.4	8	72.7
충청남도	15	5	33.3	12	80.0
전라북도	14	8	57.1	13	92.9
전라남도	22	16	72.7	18	81.8
경상북도	23	14	60.9	19	82.6
경상남도	18	3	16.7	13	72.2
제주특별자치도	2	-	-	-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각년도

주 : 소멸위험단계는 소멸위험진입단계와 소멸고위험지역, 2000년 기준 소멸위험단계는 부재



[그림 2-8] 지방소멸 위험(2000)



[그림 2-9] 지방소멸 위험(2022)

- 인구유출 및 저출산에 따른 인구위기, 지역경제 위기, 그리고 지방소멸위험으로 악순환 되는 구조가 지속됨에 따라 광역행정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
 - 문화·체육·복지 등 공공시설의 공동이용 및 활용 수요 증대, 접경지역 학교 활성화, 환경(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등 시군 경계를 초월하는 행정수요 확대 예상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광역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자체 스스로 발전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역주도의 자치권 구현이 절실함

2. 국가적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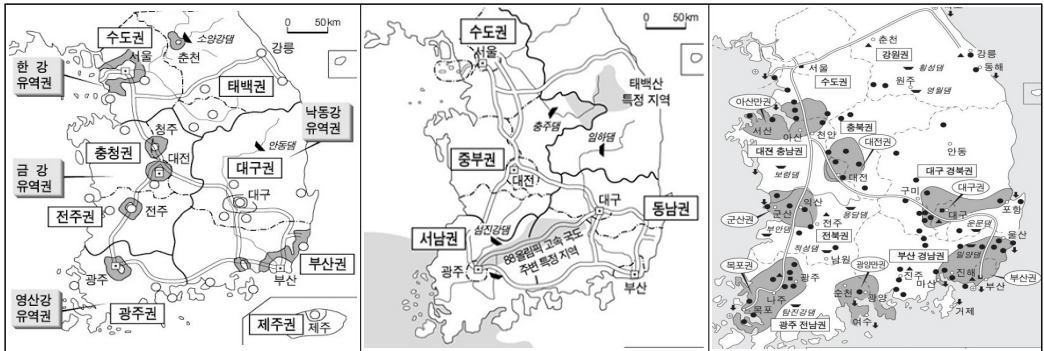
가. 정책소외 → 균형발전 → 지방시대 구현

-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그동안 국토종합계획 상에서 공간적으로 독자권 설정과 호남권 편입 등이 반복되면서 소외와 홀대를 받아옴에 따라 특화발전 추진에 한계가 발생함
 - 국토 관리의 효율성과 국가 차원의 규모의 경제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전북은 국토계획 상 종속변수로 전략하여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 지속
 - 탄소산업, 농생명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특화된 산업을 기반으로 미래 국가산업 발전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호남권이라는 역사적 테두리안에 전북을 포함시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 목표에 역행

[표 2-9] 국토종합계획상 전북 권역

구분	공간전략	전북 권역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권역개발	독자권(전주권), 금강유역권(충청, 전북)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분산형 거점개발	서남권과 중부권으로 이원화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다핵 개발방식(7대 광역권)	독자권(전북권), 군산권(7대 광역권)
4차 국토종합계획	광역개발(10대 광역권)	전주군장권(10대 광역권)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7+1 다핵형 국토구조(대내)	독자권(전북권)
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	광역경제권(5+2)	호남권(전북·광주·전남)
5차 국토종합계획	수도권, 지방대도시권, 중소도시권	새만금(중소도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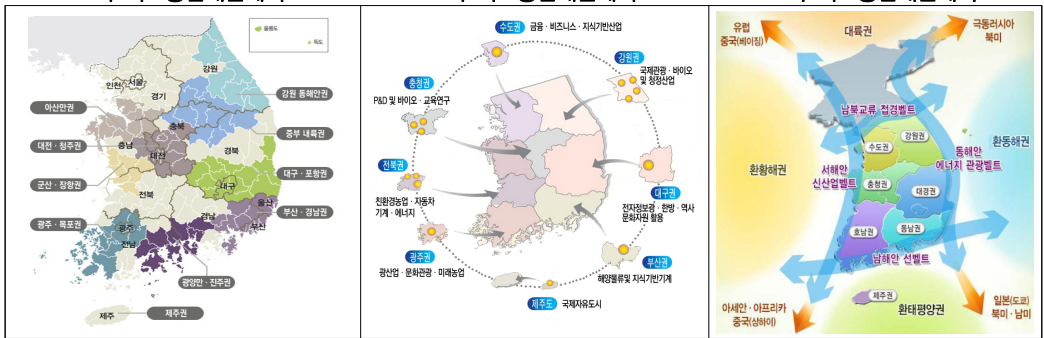
자료 : 국토종합계획, 국토부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4차 국토종합계획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

- 광역시가 부재함에 따라 광역시와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계획수립 및 지원, 대규모 SOC 지원 등에서 소외됨에 따라 국가 정책상의 불이익 지속
- '22년 2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한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의 법적 위상을 부여하고,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타 지자체는 광역단위의 초광역권 형성 및 사업 추진이 용이하나 광역시가 부재한 전북은 광역단위의 초광역발전계획 수립 및 협력이 어려운 상황임
- * 초광역권 :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3항)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제2조 1항)으로 한정하고 있

어 광역시가 부재한 전북은 특별법 지원에서 제외

- 전북은 수도권과 지방 차별, 영남과 호남 차별, 호남 내 차별 속에서 초광역권 및 특별자치도에서도 소외됨에 따라 4중 차별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됨
 - 광역시와 인접한 광역자치단체는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시가 부재한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 지역 중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22.5.29)됨에 따라 전북은 초광역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에서 소외됨
 - * 초광역메가시티(14개 시도) : 수도권(3), 충청권(4), 동남권(3), 대경권(2), 광주전남권(2)
 - * 특별자치도(2개 도) :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 정책적으로 소외되어 온 전북의 특별자치도 설립을 통해 균형발전 기회를 확보하고 정부가 강조하는 어느 지역에서도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나. 자립 지원 → 역동적 경제 선도 → 국가 경쟁력 제고

- 인구·경제 규모 등 자생적 발전역량이 취약하지만, 비교우위의 강점을 보유한 전북의 농생명산업, 탄소융복합산업 등 특화산업을 국가혁신성장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고도의 자치권 및 기업·투자 유치 지원 필요
 - 탄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 조성 과 기업 및 혁신기관 집적화를 이루어 산업 생태계 형성 단계 중
 - * 생산 및 연구 기반 : 탄소밸리 구축사업('11), 연구개발특구 지정('15),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18),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20),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21), 한국탄소산업진흥원('21)
 - * 기업 및 혁신기관 : 효성첨단소재, 도레이첨단소재 등 탄소소재 관련 기업 160여개, KIST 전북분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분원 등 입지, 도내 관련학과 15개(전북대 7, 군산대 3, 전주대 4, 원광대 1)
 - 그린바이오 5대 유망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인프라와 지역특화 자원 및 관련 시설이 집적화 되어 전통적인 농업에서 농생명 산업을 새로운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중
 - * 생산 및 연구 기반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05), 연구개발특구 지정('15), 종자산업진흥센터('14), 민간육종연구단지('16), 국가식품클러스터('16), 농생명SW 융합클러스터('16), 동물용



제 3 장

특별자치도 특별법 사례

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2.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3. 시사점



제 3 장 특별자치도 특별법 사례

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가. 추진 배경 및 경위³⁾

1) 추진 배경

- 국토개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주도의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독특한 문화 및 생활양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최남단 섬으로 과거 역사적·정치적 측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되어 왔다는 지역적 피해의식 고조
- 2002년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하여 세계화를 선도하는 거점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개별적 특례 위주의 제한적 접근과 일시적 재정지원 등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고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대두
-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발전시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획기적인 권한과 제도의 필요성 주장
 - 참여정부에서는 지식정보사회와 세계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획기적이고 선진적인 분권모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수 있는 지역으로 제주도를 주목
 - 제주도는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리 극복 수단 마련과 규제를 완화하고 핵심산업 육성에 필요한 특례확대 절실 인식 확산
- 제주의 사회·문화·경제 등 지역적·역사적 특성을 살려 자율과 책임,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고,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3) 제주특별자치도 15년 평가 및 향후 전략수립 연구(제주연구원, 2021) 재정리

2) 추진 경위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 지방분권 정책이 강화되면서 제주평화포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구상 가시화
- 2003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지방자치시범지역 추진기획단’ 구성
 - 기본방향 : 행정계층구조 개편, 자치사무 개편, 자치재정권 확대, 지방자치권 강화, 지방의회 기능 강화, 민주적 주민통제 강화
- 2004년 11월 자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여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제출
 - 자치입법권 강화 : 규제완화 조치가 필요한 법률을 대상으로 조례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치입법 확대를 위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법률안 제출요구권 부여
 - 자치재정권 확대 : 제주의 국세 이양 및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 특례 부여
 - 자치조직·인사권 강화 : 교육자치제 및 자치경찰제를 조례로 최대한 위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제주도 이양 검토, 기구 및 정원 관련 자율권 확대와 외국인 공무원 채용 특례
 - 주민참여 확대 : 재정주민투표제 및 주민발안투표제 도입 검토
 - 자유시장 경제모델 구축 : 규제완화 등으로 사람·자본·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 보장 최대화, 모든 규제 완화 및 글로벌 스탠다드 지향, 조세감면 범위 확대와 무비자 입국 확대, 영어 공용화 기반 구축, 흥가프프로젝트 추진
 - 친환경 동북아 중심도시 육성 : 지역 특화형 핵심산업(관광·교육·의료·1차산업)과 첨단산업 육성(4+1), 세계적 수준의 관광산업 육성, 농수축산물산업 경쟁력 강화, 국제적 교육의 메카로 육성, 선진 의료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 2005년 5월 중앙부처 검토와 보완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 공표되고, 2005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된 입법 추진을 위해 3개 법률안 국회 제출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 2006년 2월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의결(‘06. 02. 21. 공포, 법률 제7849호)

- 2006년 5월 3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나. 특별법 주요 내용

1) 조문 구성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크게 특별자치도 설치 및 운영,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제고, 자치분권 강화, 산업발전 특례로 구성
- 2006년 최초의 특별법 제정시 총 17장, 363조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2회 개정작업을 거쳐 2022년 기준 총 6편, 8장, 481조로 확대
 - (1편) 총칙, (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 (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5편) 보칙, (6편) 벌칙

[표 3-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총칙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국가의 책무, 제주자치도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별자치도 설치·운영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지원위원회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주민참여 확대, 도의회 기능 강화, 자치조직 및 인사, 교육자치, 자치경찰, 자치재정, 감사위원회
국제자유도시 개발 및 기반조성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계획, 외국인 자유왕래 및 정주환경 조성, 교육환경의 조성, 세계평화의 섬 지정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관광 및 문화 진흥, 농림축수산업 및 식품산업 진흥, 지식경제산업 진흥, 의료·보건 복지 및 보훈 증진, 환경보전, 고용 및 노동서비스 증진, 토지 이용 및 교통·항만의 개선, 소비자 보호 및 소방·안전 강화
보칙	사회협약, 해외협력, 국가공기업을의 협조, 개발센터 등에 대한 출연 등, 청문, 감독,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조례제정 사항의 최소 기준, 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의제
벌칙	자치경찰, 주민소환투표, 출입국관리, 관광, 의료, 환경, 자치감사, 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양벌규정, 이익의 몰수, 과태료, 고발 및 통고처분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기본방향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기본적 방향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확대 등 자치권 확대와 시범적 지방분권 선도, 지역역량 강화, 자유시장경제모델 구축
- 자치권 확대는 단기적으로 국제자유도시 구현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상응하는 제주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및 자립을 위해 홍콩과 유사한 형태의 자치모형 구현
- 자치입법권 확대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의무부과, 권리 제한, 벌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3) 비전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당시는 핵심산업(관광, 교육, 의료, 1차산업)과 이에 기반한 IT 등 첨단산업의 육성으로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 육성으로 설정
 - 사람·자본·상품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이상적 자유 시장경제 모델 구축
 - 친환경 동북아 중심도시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특별자치도를 도입하여 분권형 선진국가 선도



4) 단계별 제도 개선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제정단계부터 6단계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22년 현재 7단계 제도개선 준비 중
 - (1단계) 1,062건 개선, (2단계) 278건, (3단계) 365건, (4단계) 2,134건, (5단계) 698건, (6단계) 123건 등 총 4,660건의 제도 개선 추진

[표 3-2]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도개선 현황

구분	1단계('06.2.21. 제정)	2단계('07.8.3. 개정)
추진근거	정부혁신위 구상안	제주도 요구
주요내용	<p><자치분권체계 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인건비제도 배제 · 균특회계 내 제주계정 설치 · 세율조정권 상향 (50→100%) · 도지사 소속 자체 감사기구 설치 · 자치경찰제 도입 <p>[핵심산업 관련 기본규제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 초중등학교, 국제고교 설립허용 · 외국인카지노 등 관광관련 권한 이양 · 외국의료기관 설립 허용 	<p><핵심산업육성 관련 특례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과기단지투자진흥지구 사업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 적용 배제 ·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확대 (고등학교 이하 설립기준, 승인절차내국인 입학 비율 상향) · 면세점이용횟수 제한 완화(연간 4회→6회) · 의료관광 특례 확대(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제도개선	1,062건	278건
구분	3단계('09.3.25.개정)	4단계('11.5.23. 개정)
추진근거	권한이양·규제개선 기본계획	정부주도 법률 단위 일괄이양
주요내용	<p><분야·기능별 일괄 이양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3법 일괄이양(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 산업육성법) · 농·축·도시개발 관련 규제 권한의 일괄 이양 · 전국 통일 사무를 제외한 건축·도시개발 관련 권한 일괄 이양 · 영어교육도시 지정 근거 마련 ·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 설립허용 	<p><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식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확대 (기존 4학년 이상에서 3학년 이하도 허용)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지원근거 마련 ·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근거 마련 · 규제 자유화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 부가가치세 환급 근거 마련 · 자치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제주계정 사업군 통합)
제도개선	365건	2,134건
구분	5단계('15.7.24. 전부개정)	6단계(19.12.10 법률안 공포)
추진근거	제주도 요구	제주도 요구
주요내용	<p><권한 추가이양 및 전부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 통행금지 권한 신설 ·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 제주산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근거 마련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특례 보완 · 구(舊) 국도 국비 지원근거 마련 · 꽃자왈 보전근거 마련 · 연관법률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한 법률체계·용어 정비 	<p><권한 추가이양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 규정에 명시 · 풍력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주민 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상향 · '꽃자왈' 보호지역 지정 법적 근거 마련 · 투자진흥지구 세부사항 확대 및 관리 방안 마련 · 대여사업용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근거 마련 · 차고지 증명제 관련 조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에 추가
제도개선	698건	123건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후 단계별 제도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2년 정도이며, 지원위원회 제출 후 정부안 확정 단계와 국회의결 단계에서 가장 많은 기간이 소요

[표 3-3]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단계별 제도개선 소요기간

구분	과제확정	의회 동의	지원위 제출	정부안 확정	국회 제출	국회 의결	공포일	총소요 기간
1단계	'05. 9	-	'05.9.21	'05.10.14	'05.11.22	'06.2.9	'06.2.21	제정
2단계	'06.11	'07.2.8 (보고)	'06.11.27	'07.5.15	'07.5.22	'07.7.3	'07.8.3	9개월
3단계	'07.12	'09.3.19. '08.2.21 (보고)	'07.12.12	'08.10.7	'08.10.14	'09.3.3	'09.3.25	1년 2개월
4단계	'09.6.23	'09.7.21	'09.7.24	'10.5.4	'10.5.18	'11.4.29	'11.5.23	1년 10개월
5단계	'13.2.27	'13.3.20	'13.3.28	'14.11.18	'14.12.1	'15.7.6	'15.7.24	2년 4개월
6단계	'16.7.5	'16.9.9	'16.9.30	'17.12.26	'17.12.28	'19.11.19	'19.12.10	3년 2개월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 현재 7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데 '19년 9월 내부적으로 과제를 확정하고 의회동의('19.10월), 지원위원회 제출('20.7) 후 부처 협의가 완료('20.12)된 상태

다. 특별법 활용 현황

1) 적극적 활용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에 명시된 자치분권 및 국제자유도시 관련 특례사항 중 제주도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특례는 73개 조문

[표 3-4]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상 적극 활용 내용

구분	조문
자치 분권	법률안건 제출 4조(국가의 책무)
	자치조직, 인사 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46조(직군·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도의회 36조(도의회위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39조(정책자문위원), 43조(인사청문회)
	자치재정 4조(국가의 책무), 123조(세율조정 특례), 124조(지방교부세 특례)
	교육자치 83조(보통교부금 등의 특례), 216조(학교·교육과정 운영 특례), 223조(국제학교 설립 등)
	자치경찰 88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90조(사무)
	특행기관 23조(기관기준 등), 24조(우선 이양대상사무)
감사위원회 131조(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139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474조(벌칙)	
국제 자유 도시	관광산업 육성 147조(개발사업 기초조사)~152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 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 특례), 19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239조(관광개발 계획), 240조(관광숙박업등급 지정 특례), 241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 244조(관광지 조성계획 등의 특례)~249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251조(휴양펜션업 등록), 254조(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255조(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 면제 또는 환급)
	1차산업 육성 267조(농림축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268조(농림축수산업의 수급 안정), 269조(농림축수산업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 270조(농어촌지역의 지정 특례), 273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274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275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등에 관한 특례)
	신산업 활성화 301조(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 303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304조(풍력지원의 공공적 관리)
	제주형 환경보전시스템 구축 351조(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353조(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조성), 354조(꽃자왈 보전), 355조(절대보전지역), 356조(상대보전지역), 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358조(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363조(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377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390조(지하수 관리 특례), 392조(온천관리 특례), 393조(지하수관리조례의 제정·시행 등)
	국토관리특례 40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건축특례 407조(건축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 408조(건축에 관한 특례)
교통(안전)·항만 특례 427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427조의2(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434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439조(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 440조(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2) 활용 미흡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상의 특례 중 활용이 미흡한 대상은 67개 조문이며, 주요 사유는 활용여건 미성숙, 전국 공통기준 적용, 일부 특례 실효성 미흡, 적용사례 발생빈도 저조, 전문인력 부족 등

[표 3-5]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상 활용 미흡 내용

구분	조문
중앙정부의 후속조치 미흡(3)	4조(국가의책무), 125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255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활용여건 미성숙 (14)	206조(외국방송의 재송신), 209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210조(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219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220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263조(뉴스통신사업 등에 관한 특례), 264조(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265조(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308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310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311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312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의무), 313조(원격의료에 관한 특례), 431조(제도에 관한 특례)
전국 공통 기준 적용 (17)	213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278조(농지보점금 부과징수에 관한 특례), 283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289조(수산업 등에 관한 특례), 290조(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특례), 291조(어장관리 등에 관한 특례), 292조(수산자원관리 등에 관한 특례), 323조(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329조(정신보건에 관한 특례), 333조(장사 등에 관한 특례), 334조(건강가정지원에 관한 특례), 335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336조(성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337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338조(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특례), 339조(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특례), 340조(한부모가족복지에 관한 특례)
조문 실효성 미흡 (4)	146조(사업시행예정자 지정), 198조(체류지역확대허가 등), 242조(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281조(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적용사례 발생 빈도 낮음 (6)	153조(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154조(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 시설의 귀속 등과 이주대책), 165조(국유재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 212조(남은 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262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419조(항만건설사업 관련 실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대체사업 추진 중 (2)	215조(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 217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
전문인력 부족 (2)	445조(위해물품 등의 수거, 파기 등의 명령 등에 관한 특례), 446조(검사와 자료제출 등에 관한 특례)
소극적 활용필요 (2)	149조(개발사업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민료시 조치), 279조(농지분할에 관한 특례)
향후 활용 검토 필요 (5)	41조(대규모개발사업 등에 관한 보고), 158조(특별개발우대사업), 237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243조(외국인투자의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460조(국가공기기업의 협조)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3) 특별법의 부정적 현황

■ 균특회계 예산 축소

-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2007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제주계정이 신설되어 재원 확보 측면에서는 안정성 제고
- 반면, 균특회계 전체 규모는 2005년 5.4조에서 2020년 10.3조로 약 2배 규모 확대되었지만 제주계정은 2007년 신설 당시 규모로 유지되어 상대적으로 균특회계 내 비율이 축소된 상황

[표 3-6] 균형발전특별회계 추이

단위 : 조

구분	'05년	'07년	'09년	'11년	'13년	'15년	'17년	'19년	'21년
합계	5.4	6.8	9.6	9.8	9.9	10.4	9.8	10.7	10.3
지역자율 (%)	4.1	5.0	3.8	3.6	3.4	4.5	4.7	5.5	2.5
	75.9	73.5	39.6	36.7	34.3	43.3	48.0	51.4	24.3
지역지원 (%)	1.3	1.5	5.4	5.8	6.2	5.4	4.7	4.8	7.5
	24.1	22.1	56.3	59.2	62.6	51.9	48.0	44.9	72.8
제주·세종 (%)		0.3	0.4	0.4	0.3	0.5	0.4	0.4	0.3
		4.4	4.2	4.1	3	4.8	4.1	3.7	2.9

자료 : 기획재정부

■ 공모사업 등의 소외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효율적인 관광사업 추진과 관광외화수입 증대를 위해 제주관광기금을 설치·운영 중
- 문체부의 전국단위 공모사업 진행시 제주도는 별도의 관광기금 특례를 운영함에 따라 공모사업에 배제되거나, 부처의 국가예산사업 확보 과정에서 제주계정 활용 권고

■ 국가사무의 유지 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후 국가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었으며, 이중 국도 등의

사무 또한 예산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

- 국도의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데 국도 연장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의 범위와 물가상승 요인 등으로 유지관리 부담 증가

라. 주요 지표 변화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인구는 19.6% 증가하였으며, 지역내 총생산과 1인당 GRDP 등 경제부문과 지방교부세, 재정자립도 등 재정 등의 주요 지표가 상승
- 특히 관광객 규모는 2배 이상, 관광진흥기금은 6배, 해외 직항노선은 16개 도시가 추가로 확대되는 등 관광 부문의 성과가 현저히 증가

[표 3-7]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주요 지표 변화

구분		2006년	2020년	증가율
인구		56만명	67만명	19.6%
경제	지역내총생산	8조 6,999억원	20조 2,611억원	132.8%
	1인당 GRDP	16,001천원	30,720천원	91.9%
재정	예산규모	2조 5,972억원	5조 8,299억원	2배
	지방교부세	6,197억원	1조 4,755억원	2.4배
	재정자립도	29.9%	32.7%	2.8%p
관광	관광객	531만명	1,024만명	2.2배
	관광진흥기금	41억원	271억원	6.6배
	직항노선	3개국 9개 도시	6개국 25개 도시	
1차산업	농업조수입	1조 1,945억원	1조 6,538억원	38.4%
	축산조수입	5,113억원	1조 1,523억원	125.4%
	수산조수입	6,114억원	1조 1,113억원	81.7%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2.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가. 추진 배경 및 경위

1) 추진 배경

- 강원도는 백두대간의 산림과 동해바다의 수자원 등의 보호로 인해 환경규제가 심하고 접경지역의 군부대로 인한 군사규제로 묶여 타 지역보다 개발이 지연되고 각종 사회 시설들이 낙후되어 주민들의 불편 초래
 -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산림, 수자원 및 국립공원 등의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하고, 6·25 전쟁 휴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가 설정되면서 그 관할구역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졌고, 이후 민간인통제구역이 설정되어 군사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위축 장기화
- 최근에는 지속적인 인구소멸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고조
- 법적 지위관할구역 및 조직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다가올 환동해 시대에 강원도가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환동해경제자유특구를 설치하여 지역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2) 추진 경위

-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2008년 강원도의 지역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강원도의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의제가 제기되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 논의 시작
-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이계진 도지사후보의 선거공약, 2012년에는 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문재인(민주당) 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이슈의 지속화
- 2017년 다시 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민주당) 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채택되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기본방안 연구용역 수립과 학술대회 등을 통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이슈가 전국단위로 확산

- 2020년 9월 이양수 국회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2021년 4월 허영 국회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
- 2022년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관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5월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대안(총 23조)으로 법안소위심사 진행
- 2022년 6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자치도 특별 법)’이 제정되고, 2023년 6월 11일 시행 예정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정된 후 강원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3건의 개정안 발의
 - 2022년 6월 23일 : 국무총리 산하에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포함하 는 개정안 발의(허영 의원 등 10인, 노용호 의원 등 13인)
 - 2022년 8월 18일 :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허영 의원 등 10인)
 - 2022년 9월 13일 : 첨단과하기술단지 조성, 영어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강원관광 기금 설치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박정하 의원 등 11인)

나. 특별법 주요 내용

1) 조문 구성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이양수 의원 및 허영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22년 6월 제정 된 법안의 내용이 다르게 구성되어 개별 검토
 -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 및 특례, 환동경제자유특구 관련 지구 지정·개발사업 시행·지원 및 특례, 내·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등 총 8장 69조로 구성
 - 허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자치권 확대와 평화특례시 지원 등 총 30조로 구성

[표 3-8] 강원(평화)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발의안 내용

이양수의원 안		허영의원 안	
제명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와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1조~6조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1조~5조	목적, 적용범위,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7조~8조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법령 적용상의 특례	6조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9조~10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7조~8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제3장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11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9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12조	환동해경제자유특구와 배후지역 간의 연계발전 지원		
13조~15조	국가 등과 강원특별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조직 특례	10조~14조	국가와 강원특별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조직 특례,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지역인재 선발 채용
16조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17조~18조	재정특례, 특별회계 계정 설치 특례	15조~16조	재정특례, 특별회계 계정 설치 특례
		17조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19조~21조	주민참여 예산제도, 강원특별자치도발전기금 설치 및 용도	18조~20조	주민참여 예산제도, 강원특별자치도발전기금 설치 및 용도
22조~28조	감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 등, 감사위원장, 사무국, 자치감사계획 등, 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비밀유지의무	21조~27조	감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 등, 감사위원장, 사무국, 자치감사계획 등, 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비밀유지의무
		28조~29조	평화특례시 지정 및 지원

이양수의원 안		허영의원 안
제4장 환동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구의 지정 등		
29조~38조	환동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의 내용, 환동경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특구 지정시 고려사항, 개발계획, 개발계획의 변경, 특구 지정 효과, 행위 제한, 특구지정 해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제5장 환동해경제자유특구 개발사업의 시행		
39조~50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실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고시 등, 안·허가 등의 의제, 개발사업의 착수와 연기, 토지수용 등, 준공검사, 비용의 부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세제 및 자금지원	
제6장 내·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등		
51조~61조	기반시설 우선 지원,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의 지원,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환경보전 지원,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원, 투자기업의 대체생산시설 설치 자금지원, 투자기업의 실태조사 등, 국공유 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주택공급 특례,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관광산업육성 지원	
제7장 환동해경제자유특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62조~66조	농림어축산업 및 식품산업 진흥, 향만 및 물류산업 육성 지원,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의료기관개설 특례, 환경영향평가 특례	

자료 : 의안정보시스템, 재정리

- '22년 6월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총 23조이며, 자치조직, 자치재정, 자치사무, 자치인사, 자치감사 등 자치권 확대를 중심으로 구성
 - '22년 5월 4일 개최된 법안소위 심사에서 대한민국의 행정체계를 변경하는 사항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소관 부처가 수용 가능한 특례를 중심으로 제정안을 통과시키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및 지원, 개발사업 특례, 투자기업 지원 등은 삭제되고 자치권 확대 중심으로 대폭 수정
- 2022년 9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6월 23일 제안된 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설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대안 가결되어 최종 25조로 확대

[표 3-9]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일반	(1조) 목적, (2조) 적용범위, (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책무	(3조) 국가의 책무, (4조) 강원자치도의 책무
자치 조직	(6조) 특별자치도의 설치
자치 재정	(8조) 균특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14조) 주민참여 예산제도
자치 사무	(9조) 강원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11조)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자치 인사	(12조) 국가와 강원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13조) 지역인재 선발 채용
자치 감사	(15조~21조) 감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 등, 감사위원장,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자치감사계획 및 결과의 처리 등, 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비밀유지의무
특례 및 지원	(7조) 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별지원, (10조) 법령 적용상 특례, (10조의 2) 지원위원회 설치, (10조의 3) 지원위원회 심의결과 조치 등, (22조) 시군 특례부여 및 지원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특례지원 규정에 대한 국화부처 의견

- 전북의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이양수허영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한 국회 행안위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국회 및 부처 의견을 검토
- 총칙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명칭은 “지역명+자치단체 종류”로 규정해야 하며, “평화” 명칭 삭제 필요, (기재부) 국가의 책무 규정은 불합리, 국세 이양조항은 삭제 필요

- 지원위원회 : (행안부) 대통령령으로 설치함이 바람직하고, 국무총리 소속 설치시 동의, (국조실) 부처 책임 하에 설치 검토 필요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더라도 민간위원은 제외하고 정부위원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지원 : (기재부) 특별자치단체에 대한 우선지원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감안시 전체 삭제, (통일부) 허영의원안의 남북협력기금문구 삭제 필요
- 인사교류 : (상임위·행안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고려
- 사무위탁 특례 : 별도 의견 없음
- 주민투표 특례 : (행안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특례는 실효성이 없어 삭제 필요, 주민 청구권자 요건 완화는 수용
- 조직 특례 : (행안부) 별도 조직 특례 부여는 특별자치도로서 수행하게 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검토 필요
- 지역인재 선발채용 : 별도 의견 없음
- 재정 특례 : (상임위) 한정 재원에 대한 특례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고려 필요, (행안부·교육부) 타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및 교부금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 검토 필요
- 균특회계 계정 설치 : (상임위) 균특법 개정 필요, (기재부) 칸막이 효과로 인한 재정 운용상의 비효율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축소 우려
- 발전기금 설치 : (상임위) 국가재정법 개정 필요, 자원관련 법 개정 필요, (기재부) 국가재정법상 기금설치요건에 미 부합
- 감사위원회 설치 : (상임위) 자치감사와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에 관한 추가 규정 필요, (행안부) 중앙정부의 감사권 유지 필요
- 평화특례시 지정 및 지원 : (행안부) 현재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례 부여가 가능하므로 별도 조항 신중 검토, (기재부) 평화특례시는 강원도에서 추가지정 하는 것이므로 자체 재원으로 추진 필요

-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지원특례 등 : (행안부) 환동해경제자유특구를 운영할 필요성 있으나, 기존 행재정 특례와 연관성 관련 부처와의 협의 필요, (산업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이미 지정되어 있어 신중검토 필요, (기재부) 유재산 관련 특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신중 검토, (환경부·산림청·국방부) 인허가 의제와 관련하여 소관 업무와 연관된 인·허가 의제 신중검토 필요

3. 시사점

■ 先 법률 제정 後 법률 개정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과정을 참고해볼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형평성으로 초기에는 법률 제정에 초점을 두고 진행 필요
 - 강원 사례 고려시 초기부터 자치권 확대 외에 기업유치, 투자촉진 등과 관련된 다수의 특례를 포함시킬 경우 부처는 형평성을 사유로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
-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법률 제정 이후에는 강원도와 공조를 통해 전북에 필요한 조문들을 수정보완시키기 위한 법률 개정이 실효성 측면에서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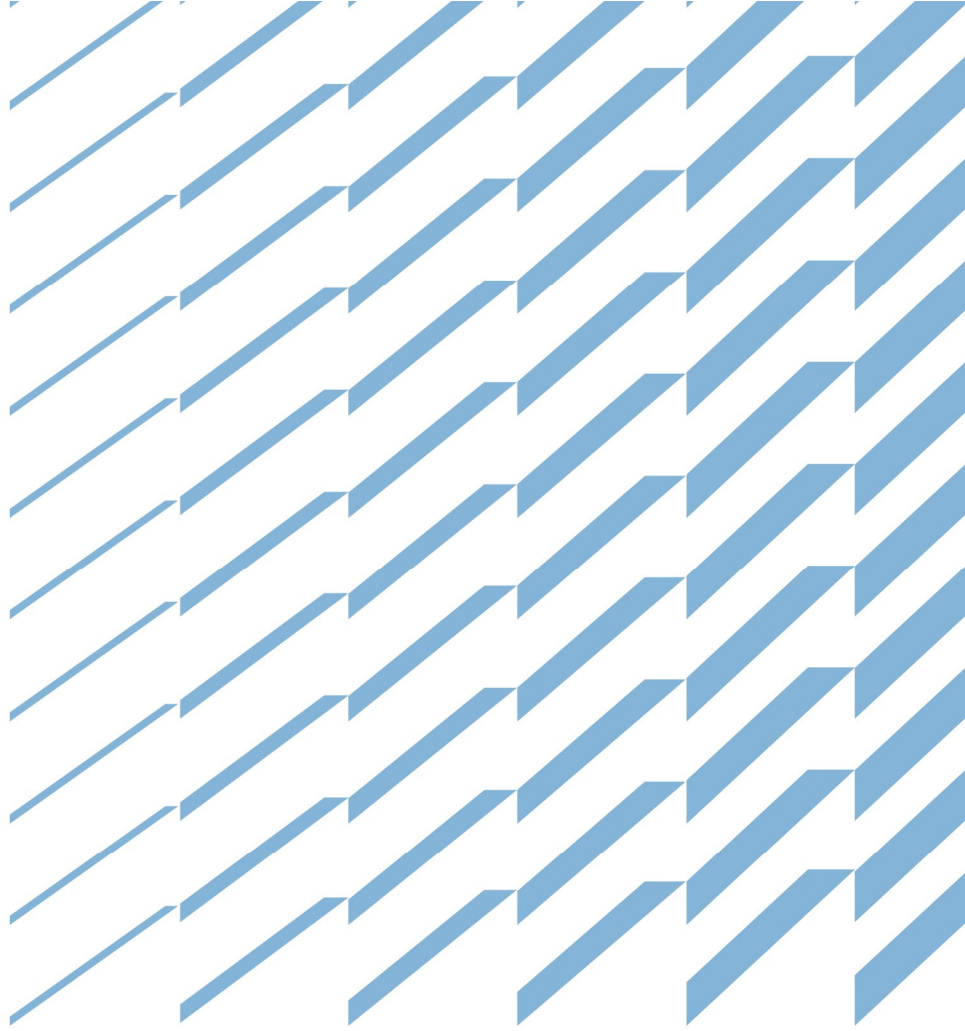
[표 3-10] 특별자치단체 특별법 조문 변화

구분	제주	세종	강원		
			이양수 의원	허영 의원	대안(행안부)
제정발의	363조 (‘06.2.21)	17조 (‘10.12.27)	69조 (‘20.9.1)	30조 (‘21.4.29)	23조 (‘22.5.29)
현재	481조	30조			25조 (‘22.9.22)

■ 아젠다 설정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아젠다가 삭제된 상태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행안부에서는 특별자치도만의 비전을 담은 아젠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있기 때문에 전북의 특화된 아젠다 설정 필요

-
- 제주특별자치도의 아젠다는 국제자유도시이며, 강원특별자치도는 당초 환황해경제자유특구, 평화특별자치도로 추진하였으나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삭제



제4장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구상



1. 기본 구상
2. 핵심 아젠다 설정
3. 특별법 설계
4. 향후 개정 조문
5. 미래상

제 4 장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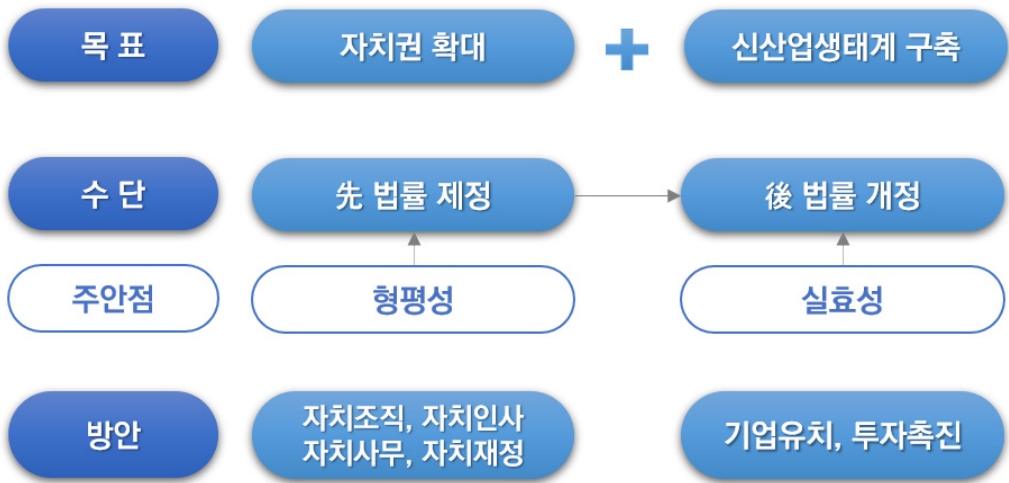
1. 기본 구상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기본 구상은 지역위기, 정책소외, 새만금 잠재력 등 전북의 여건을 고려해 전북의 과제를 개선하기 위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본구상 검토
 - 전북의 여건 : 인구 위기, 지역경제 위기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위험이 심화되고 4중차별을 받고 있지만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새만금의 미래 신산업 거점으로서의 개발 잠재력 우수
 - 전북의 과제 :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시군을 연계, 통합 관리 등 광역행정수요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과 낙후된 전북의 성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의 특별한 협력관계 설정이 필요하며, 새만금 개발 효과를 인접한 내륙으로 확산시키는 전략 필요
 - 추진 방향 : 전북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효율화 측면의 자치권 확대와 정부의 국정과제인 역동적 경제 구현을 위해 새만금과 연계한 신산업생태계 구축 필요



[그림 4-1] 과제 및 방향

- 특별법의 기본구상은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포괄하는 목표, 단계별 접근 등을 고려한 수단, 주안점 등을 고려하여 검토
- 특별법의 목표는 최근에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사례를 참조하되 중장기적으로 전북의 실익 극대화를 고려하여 크게 자치권 확대와 새만금과 연계한 신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설정
- 특별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제주, 세종, 강원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선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데 집중하고 법률 제정 이후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연계하여 전북의 이익 극대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단계별 접근
- 특별자치도 설립에 따른 주안점은 법률제정 시에는 형평성을 우선시하고, 법률 개정 시에는 실효성 확보에 초점
-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 중 자치권 확대는 자치조직, 자치인사, 자치재정, 자치사무 등의 분야를 고려하고, 신산업생태계 구축 부문은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등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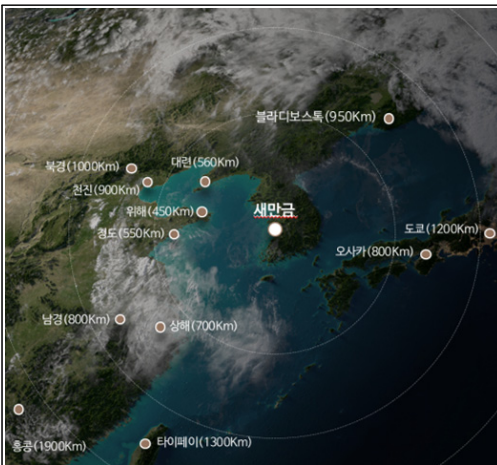
[그림 4-2] 기본 구상

2. 핵심 아젠다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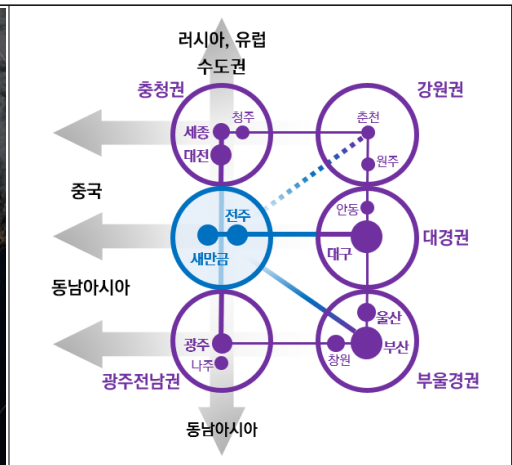
- 제주특별자치도는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 육성으로 핵심아젠다를 설정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법안 발의시 환동해경제자유특구와 평화특별자치도 등으로 제시되었으나 법률 제정 과정에서 핵심 아젠다 삭제
- 핵심 아젠다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제정 목적을 구체화하고, 향후 법률 개정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영역으로 특별법의 기본구상을 고려하고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검토
- 국가 주도로 추진중인 새만금의 개발잠재력 및 미래가치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전북의 지정학적 강점 등을 고려하여 핵심 아젠다를 “동아시아 경제도시”로 설정

핵심 아젠다 : 동아시아 경제도시

- 경제거점 도약 : 환황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새만금의 잠재력과 전북의 자원 및 인프라를 연계 활용해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 동아시아 경제거점으로 도약
- 자치권 확대 : 지방소멸 위험과 광역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으로 선도적 지방분권 모델 구축 및 동아시아 경제도시 지원



[그림 4-3] 지정학적 잠재력



[그림 4-4] 국토공간 구조 잠재력

3. 특별법 설계

가. 기존 발의안 검토

■ 발의안 개요

- 법안명 :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
- 발의일 : 2022년 4월 12일
- 발의인 : 안호영 의원 등 17인
- 주요내용 : 전문 42조
 -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설치 : 자치권 보장, 국가 및 지자체 책무, 지원, 특례 등
 -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 자유무역지역,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 세부 내용

- 안호영의원 발의안의 아젠다는 부재하며, 크게 자치권 보장과 경제 관련 분야로 구분
- 자치권 보장 : 목적, 적용범위, 국가책무, 전북새만금자치도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북새만금자치도의 설치, 지원위원회의 설치, 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발전기금의 설치, 발전기금의 용도, 특별지원, 사무위탁특례, 주민투표특례, 조직특례, (국가와)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 선발채용, 재정특례, 균특계정 특례, 주민참여 예산, 감사위원회,
- 경제 발전 :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 등,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인허가 의제,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 시 조치, 개발사업 일괄처리지구, 조세의 감면, 부담금 등의 감면,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자금지원 등, 지방채 특례
- 기타 : 사회협약, 해외협력, 국가공기업의 협조

■ 검토 결과

- 자치권 보장 관련 조문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의 내용보다 광범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 및 국회 행안위에서 수용하기에 어려움 발생이 예상
- 새만금 중심의 경제발전 관련 조문은 크게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특별법)'에 자유무역지역과 유사한 규제자유특구(제52조의 4)가 명시되어 있으며, 2020년 8월 6일 발의되어 소관위에서 심사중인 새특별법 개정안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포함
 - * (제52조의 4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지사와의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새특별법 개정안(제11조의 5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8조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 특별법 제정 과정과 국회법 고려시 기 발의된 특별법보다는 新 특별법 발의가 형평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유리
 - * 국회법 (제58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만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안건을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새만금과 관련된 특례 사항은 현재 계류중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보완하고, 도내 기타 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추진하는 Two-Track 방식 진행

나. 新 특별법 구상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안호영의원이 발의한 특별법과 병합심사를 통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 새로운 특별법 발의 필요
- 新 특별법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제정 과정 및 강원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전북의 실익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보완 필요
- 또한 전라북도 여야 양 진영의 대표성을 보유한 국회의원의 공동 발의를 통해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과제 중요

1)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수정·보완

- 총 23개 조문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중 타 법률과 중복성이 강한 조문은 삭제하고, 전북의 실익을 고려하여 수정이 필요한 조문과 추가 조문을 중심으로 수정·보완
- 삭제 조문 : (제14조) 주민참여 예산제도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
 -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도록 명시
 -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11.8.5)하여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중
- 수정 조문 : (제4조) 강원자치도의 책무
 - 강원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정부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 포함) 체결
 - 협약 체결 대상을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전환하여 국무총리 산하의 지원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

- 수정 조문 : (제15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은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자체 감사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등 중앙의 감사 외에 과도한 중복 감사 우려
 - 감사기관 대상을 전북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합동감사 제외로 자치사무 보장
- 추가 조문 : 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및 심의·조치
 - 전북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검토·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추가 조문 : 조직 특례
 - 전북자치도의 도시발전단계, 새만금 연계 발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행정기구 설치를 도 조례로 정해 지방자치 구현
- 추가 조문 : 발전기금 설치 및 용도
 - 전북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전북자치도 발전기금 설치

2)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조문 설계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유사한 자치권 확대를 주요 컨셉으로 설정하고, 수정·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자치조직, 자치인사, 자치재정, 자치사무, 기타 지원 형태로 설계
 - 자치 조직 :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로 규정
 - 자치 인사 : 정수의 10% 범위에서 인사교류, 지역인재 선발 채용

- 자치 재정 : 보통교부세 보정, 균특회계 내 전복계정
- 자치 사무 : 사무위탁, 감사위원회 설치 및 자치 감사
- 기타 지원 : 지원위원회 설치(국무총리), 행·재정상 특별지원
- 자치권을 중심으로 법안을 설계하고, 전라북도 여당의원과 야당의원인 각각 신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달리하여 2개의 법안 마련
 - 공통 조문 : 목적, 적용범위, 국가의 책무, 자치도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별자치도의 설치, 자치도에 대한 특별지원, 지원위원회 설치, 지원위원회 심의결과 조치, 균특회계 계정 설치, 사무위탁 특례, 법령적용상의 특례, 주민투표 특례,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 선발채용, 조직특례, 감사위원회 설치·직무, 감사위원장, 사무기구, 자치감사 계획, 자치감사결과처리, 징계·문책 사유 시효정지, 비밀유지
 - 별개 조문 : 발전기금의 설치, 발전기금 용도, 감사 등에 관한 특례, 시군 특례부여 및 지원

3) 전북특별자치도 新 특별법(안)

- ① 여당 발의
 - 법안명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발의자 : 정운천(대표발의), 김석기, 김영식, 김희곤, 노용호, 박성민, 성일중, 송석준, 이달곤, 이용호, 이종성, 지성호, 최춘식 의원 등 13인
 - 발의연월일 : 2022년 8월 18일
 - 구성 : 28조 73항
 - 제안이유
 - 수도권 일극체제는 수도권으로 인구 쏠림 현상 심화,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등 악순환을 반복시켜 국가 전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으며, 특히 전북은 “초광역메가시티”에 이어 “특별자치도”에서도 소외되고,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이며,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탄소산업, 농생명 등 특화된 자원이 있음에도, 정부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낙후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지방균형 발전에서 낙후와 소외로 피해를 받아왔던 전북이 진정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지원 정책 필요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전라북도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

○ 주요내용

-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를 설치함(안 제1조)
- 전북자치도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둠(안 제7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보호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 전북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면적·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전북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14조)
-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17조 및 제18조)
- 전북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둠(안 제19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주민감사청구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음(안 제26조)

② 야당 발의

- 법안명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발의자 : 한병도(대표발의), 고민정, 김교홍, 김민철, 김성주, 김수홍, 김승원, 김영배, 김윤덕, 김철민, 박성준, 신영대, 안호영, 오영환, 윤영찬, 윤준병, 이원택, 이해식, 전용기, 천준호, 허영 의원 등 21인
- 발의연월일 : 2022년 8월 18일
- 구성 : 26조 71항
- 제안이유
 -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고 사람과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블랙홀 현상으로 지역인구는 감소하고, 지역간 불균형 격차는 확대되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있음
 - 정부의 “초광역메가시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전북은 최근 제주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 수도권·영호남·호남 안에서의 차별에 이어 사중 차별구조에 놓여 있는데, 실제 2022년 현재 전라북도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14개 시·군 중 11지역이 소멸 위기 지역임.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로 이는 그간의 지역균형발전 대책이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의미함
 -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하고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 자율, 희망의 지방시대를 표방하고 있음
 - 이에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전라북도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
- 주요내용
 -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를 설치함(안 제1조)
 - 전북자치도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둠(안 제7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 할 수 있음(안 제10조)

- 전북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면적·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전북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14조)
- 전북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둠(안 제17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주민감사청구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음(안 제24조)

[표 4-1] 특별자치도 특별법안 비교

구분	강원 (23조)	안호영의원 (42조)	정운천의원 (28조)	한병도의원 (26조)
목적, 적용범위, 국가의 책무, 자치도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별자치도의 설치, 자치도에 대한 특별지원, 지원위원회 설치, 지원위원회 심의결과 조치, 균특회계 계정 설치, 사무위탁 특례, 법령 적용상의 특례, 주민투표 특례,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 선발채용, 감사위원회 설치·직무, 감사위원장, 사무기구, 자치감사 계획, 자치감사결과처리, 징계·문책 사유 시효정지, 비밀유지	○	○	○	○
재정 특례, 국유·공유재산 대부, 개발사업 시행승인, 인허가 의제, 개발사업일괄처리지구, 조세·부담금 감면, 자금지원, 자유무역지역 지정,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사회협약, 국가공기업 협조, 해외협력		○		
조직특례		○	○	○
주민참여 예산제도	○	○		
발전기금 설치, 발전기금 용도			○	
감사 등에 관한 특례			○	○
시군 특례부여 및 지원	○		○	○
벌칙	○		○	○

4. 향후 개정 조문

- 법률 제정 후 개정 작업은 자치권 분야를 확대하고 신산업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검토
- 자치권 분야는 자치사무, 자치인사, 자치재정 등의 분야를 검토하고, 신산업생태계 구축 분야는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한 개발 특례 검토

가. 자치권 분야

■ 자치 사무

- 권한 및 사무 이양 : 중앙 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 국방, 외교, 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 수립
 - 특별행정기관 사무 이관 : 기존 전라북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양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을 지방 공무원으로 임용시 종전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용, 이양대상 사무 외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에 이관

■ 자치 인사

- 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 「지방공무원법」 제30조 제2항 및 제74조 제2항에 명시된 교육부·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도교육감·도지사의 권한으로 전환
 - * 「지방공무원법」 제30조 제2항 :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및 일반승진시험 합격자의 보충 임용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 * 「지방공무원법」 제70조 제2항 :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및 감독을 한다.

- 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 「지방공무원법」 제24조에 명시된 일반직에 대한 직위 분류제도를 도조례로 정하는 시기에 실시
 - * 「지방공무원법」 제24조 :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는 직위 분류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기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에 관한 특례 :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특별승급에 관한 특례
 -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규정
 -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제2항 : 특별승진임용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별승급 :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2항 및 제7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1호봉 특별승급(근무공무원 총 정원의 100분의 1범위)에 대한 사항을 도조례로 규정
 - *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2항 및 제78조 제3항 :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치 재정

- 지방세에 관한 특례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등 대통령령으로 명시한 기한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명시한 지방세 감면 내용을 도조례로 규정
 -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명시

*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 :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나. 개발 특례 분야

■ 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인·허가 의제 등

- 개발사업 시행승인 :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국가기관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 수렴 의무화
- 인·허가 의제 :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사·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처리
 - 인·허가 의제 예시 :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조성계획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 인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도로의 점용 허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등
- 개발사업 일괄처리기구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가 등의 민원 사무를 신속하고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 신설 가능

■ 토지수용 및 대부 등

- 제한적 토지수용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한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고,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상이면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 가능
-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 : 전북특별자치도 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가능

■ 세금 및 부담금 감면 등

- 세금 감면 : 기업투자 유치 촉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국세, 관세 및 지방세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비율보다 상향하여 적용 가능
 - 부담금 등의 감면 : 전라북도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용,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하천 점용료·사용료,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개선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
- * 관련 법률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하천법」, 「초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5. 미래상

■ 인구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시 새만금 개발 가속화 및 인접지역의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활성화로 인구가 유입되어 전라북도 제4차 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에 180만명에 근접 예상

* 인구 : '21년 1,786,855명 → '26년 1,767,434명 → '30년 1,796,096명 /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 재정

- 10년간 예산 성장세는 2배, 재정자주도는 60.8%에서 66.8%로 6%p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보통교부세가 증가해(100%→120%, 연간 4천억원*) '21년 대비 '30년 예산규모 성장세**가 20%→42.2%로 확대 전망

* 교부세 :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차액과 그 차액의 120% 보전

** 예산규모 : '21년 12.8조 → '26년 13.6조(14.8조) → '30년 15.4조(18.3조)

- 자주재원이 확충돼 재정자주도 또한 60.8%에서 66.8%로 6.0%p 상향 예상

* 재정자주도 : '21년 60.8% → '26년 55.4%(64.5%) → '30년 51.9%(66.8%)

■ 기업유치

- 전북 유치기업 수는 '21년 대비 68% 확대, 일자리는 연 2,550개 증가 예상
 - 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특례 부여로 기업유치 증가세를 4%로 전망시 지방 투자여건이 개선되어 기업유치는 연 62개 수준에서 연 104개로 확대 전망

* 기업유치 : '21년 연 62개 → '26년 연 96개 → '30년 연 104개

-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또한 연 5,681명에서 연 8,231명으로 증가 전망

* 일자리 : 최근 5년간 1억원당 고용인원수(0.22명)×기업유치 투자액(기업유치수×기업당 평균투자액 350억원)

■ 경제지표

○ GRDP는 향후 10년간 53조원에서 76조원으로 약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존 추세의 GRDP 증가추세에 신규 일자리 확대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 반영

* GRDP : '21년 52.8조원 → '26년 64.9조원(67조원) → '30년 71.9조원(75.8조원)

[표 4-2] 주요 미래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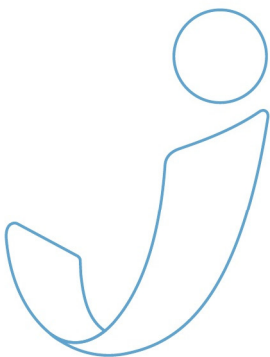
구분			2021년	2026년	2030년	증가율
인구			1,786,855명	1,767,434명	1,796,096명	0.5%
재정	예산규모	당초	128,392억원	136,325억원	154,592억원	42.2%
		변화		▽ 148,325억원	▽ 182,592억원	
재정 자주도	재정 자주도	당초	60.8%	55.4%	51.9%	6.0%p
		변화		▽ 64.5%	▽ 66.8%	
경제	기업유치	당초	연 62개	연 62개	연 62개	연 42개
		변화		▽ 연 96개	▽ 연 104개	
	일자리	당초	연 5,681명	연 5,681명	연 5,681명	연 2,550명
		변화		▽ 연 7,597명	▽ 연 8,231명	
GRDP	당초	528,205억원	649,122억원	718,598억원	43.6%	
	변화		▽ 670,693억원	▽ 758,328억원		
1인당 GRDP	1인당 GRDP	당초	2,928만원	3,673만원	4,000만원	44.2%
		변화		▽ 3,795만원	▽ 4,222만원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 광역시가 부재하여 초광역권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토 정책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제주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22.5.29)됨에 따라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전북의 특성에 기반한 독자적인 특화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필요성과 논리를 발굴하고, 제주·강원 특별법과 차별화 할 수 있는 핵심 아젠다 설정과 제주·강원의 특별자치도법 분석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대응논리 마련을 주요 목적으로 연구 진행
-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필요성은 지역적 측면과 국가적 측면으로 검토하였으며, 지역적 측면은 전북의 인구 및 지역경제 위기로 인한 지방소멸 위험을 분석하고, 국가적 측면은 정책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전북의 자립지원에 따른 역동적인 경제 선도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논리 개발
- 특별자치도 특별법 사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법을 검토했으며, 제주 사례에서는 추진 배경 및 경위, 기본방향, 비전, 조문구성, 단계별 제도개선, 활용현황, 부정적 현황, 주요지표 변화 등을 분석하고, 강원 사례에서는 추진 배경 및 경위, 조문구성, 특별법 제정 당시 국회 및 부처 의견 등을 분석
 - 제주의 경우 경제, 재정, 관광, 1차산업 등 주요 지표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으나 균특회계 예산 축소, 공모사업 등의 소외, 국가사무의 유지관리 등의 어려움도 상존
 - 강원 의 경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 및 정부의 부정적 의견이 많아 당초 발의안에서 자치권 확대와 관련된 내용 중심의 대안으로 법 제정
- 전북의 지역위기, 정책소외, 새만금 잠재력 등 여건을 고려시 광역행정수요 대응, 정부·지방의 특별한 협력관계 설정, 새만금 효과의 내륙으로의 확산 등의 과제 도출

- 전북의 과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자치권 확대와 새만금과 연계한 신산업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 필요
 - 자치권 확대는 자치조직, 자치인사, 자치사무, 자치재정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신산업 생태계 구축은 개발특례, 세제감면 등을 통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중심으로 검토
 - 초기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률 제정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실효성 측면에서 법률 개정 필요
- 핵심아젠다는 국가 주도로 추진중인 새만금의 개발잠재력 및 미래가치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전북의 지정학적 강점 등을 고려하여 핵심 아젠다를 “동아시아 경제도시”로 설정
- 강원특별자치 특별법 제정 과정과 국회법 고려시 기 발의된 특별법보다는 新 특별법 발의가 형평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새만금과 관련된 특례 사항은 현재 계류중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보완하고, 도내 기타 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추진하는 Two-Track 방식 제안
- 新특별법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수정·보완하여 조문을 설계하였으며, 여당과 야당에서 함께 발의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명칭으로 2개의 법안 마련
 - 여당 발의안은 총 2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조직특례, 발전기금 설치 및 용도와 관련된 조문을 포함
 - 야당 발의안은 총 26조 구성되어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조직특례, 감사 등에 관한 특례와 관련된 조문을 포함
- 향후 개정 조문은 자치권 분야와 개발특례 분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자치권 분야는 자치사무, 자치인사, 자치재정 등의 조문을 제시하고, 개발특례 분야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인·허가 의제, 토지수용 및 대부, 세금 및 부담금 감면과 관련된 조문 제시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시 2030년 변화될 미래상은 인구, 재정, 기업유치,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제시

2. 정책 제언

■ 先 법률 제정 後 법률 개정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과정 고려시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선 법률을 제정하고, 전북의 핵심아젠다 및 실익 등이 반영된 법률 개정 필요

구분	제주	세종	강원
제정(일자)	363조('06.2.21)	17조('10.12.27)	23조('22.6.10)
현재('22.11월)	481조	30조	25조
증감	+118	+13	+2

자료 : 법제처, 의안정보시스템

■ 정부 및 국회 대응 집중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6차례 개정되는 과정에서 행안부와 국회 행안위 단계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행안부와 국회 행안위를 대상으로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대응 필요

■ 정치권 협력 체계 구축

- 중앙 차원에서 도내 국회의원들 외에도 전북 출신 여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협력을 유도하고, 특히 사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국회 입법조사관의 협조 중요
- 지방 차원에서는 행정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회와 전북도민들의 공감대 형성 필요

■ 강원과 공조를 통한 공동 대응

- 2022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이후 강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어 전북과 강원 간 협업을 통해 특별법 제정(전북)과 개정(강원) 추진

■ 특별자치도 관계 설정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이후 대외적으로는 정부와 전북 관계에서 사무이양, 자치권의 범위와 내용 등의 세밀한 역할분담이 요구되며, 전북과 제주·강원 등과는 차별성 확보 및 지방자치 선도를 위한 협력모델 구축
- 내부적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 하부에 속한 14개 시군 행정체계를 단층체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행정체계에 대한 고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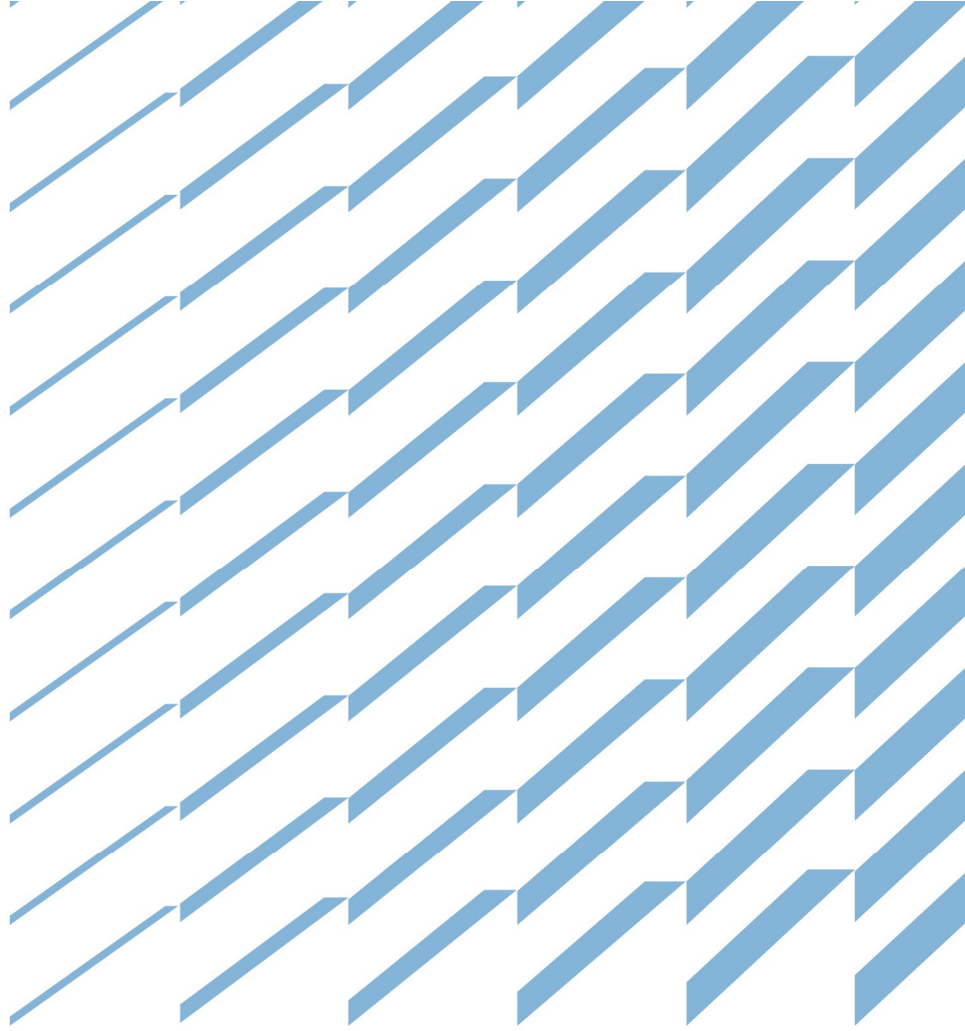
■ 추가 특례 발굴

- 인구 및 지역경제 위기 등으로 지방소멸위험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유학생 비자 간소화 등과 관련된 특례 발굴 필요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균특회계 내 제주계정 등의 사례 고려시 국가사무의 전북특별자치도 이양, 특례 추가 등의 과정에서 재원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신중 검토 필요

참 고 문 헌

REFERENCE

- 관계부처합동.(2021. 10. 14).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안). [보도자료]
- 제주연구원.(2021). 제주특별자치도 15년 평가 및 향후 전략수립 연구.
- 통계청.(2022). 장래인구 추계 시도편.
- 한국고용정보원.(2020, 2020). 지방소멸위험지수.
- 국가통계포털.(2020, 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 국가통계포털.(2000, 2021). 주민등록인구현황.
- 국가통계포털.(2000, 2020). 지역총소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법제처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부록



1. 추진경위
2. 법안심의 절차
3. 특별법안(정운천 의원)
4.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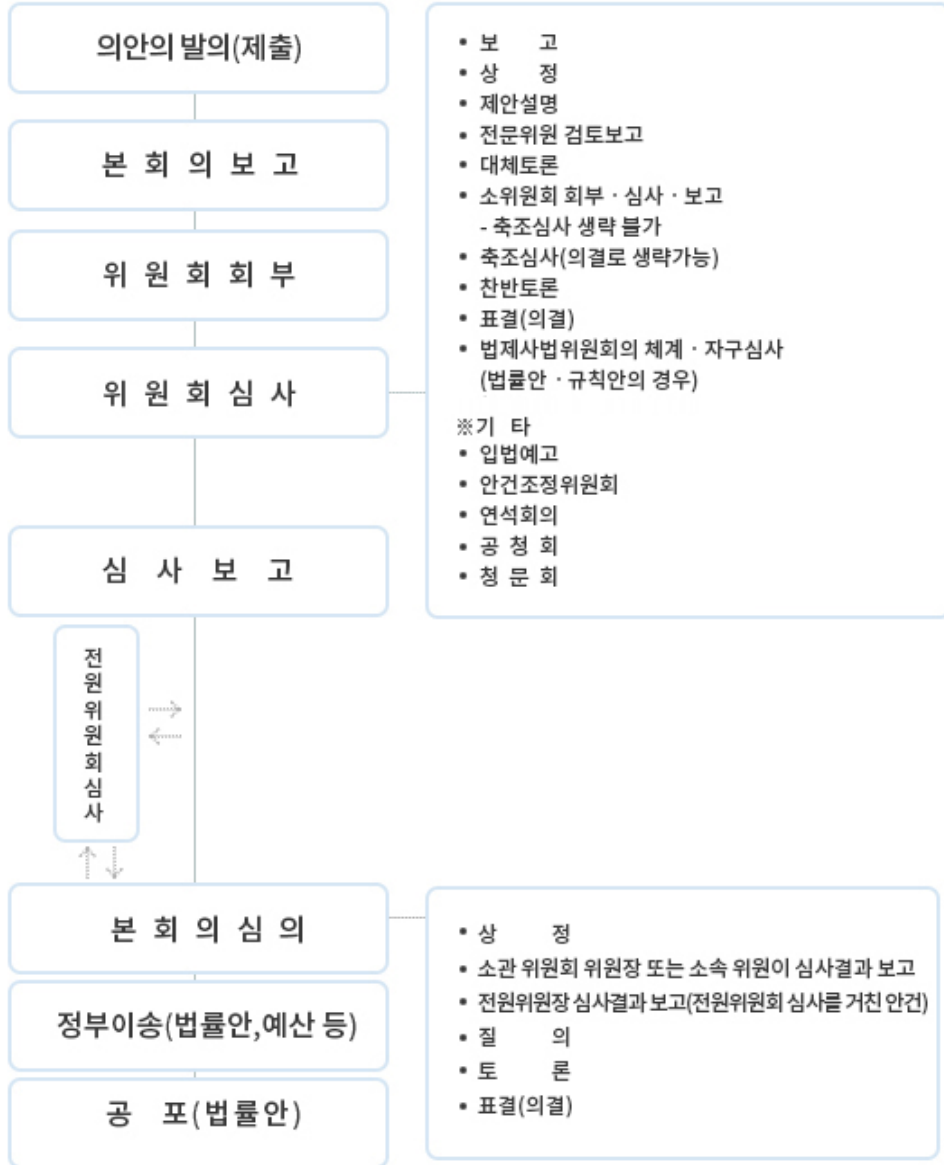
추진 경위

- 06월 민선 8기 전라북도지사 공약 반영
- 06.30 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 건의 (BH자치행정비서관)
- 07.07 특별자치도 아젠다 논의 개시(전북도-전북연)
- 07.08 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 건의(대통령)
- 07.12 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 건의(국무총리)
- 07.27 특별법 제정 간담회(전북도-전북 국회의원)
- 08.09 특별법 제정 추진계획 협의(한병도·정운천 의원실)
- 08.10 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 및 긍정 검토 요청(행안부)
- 08.1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정운천의원, 한병도의의원)
- 08.22 특별법 제정 건의 면담(민주당 원내대표)
- 08.24 특별법 제정 간담회(전북도-전북 국회의원)
- 08.24 특별법 제정 협조 요청(조응천·박성민·천준호 의원)
- 08.25 전북특별자치도 발제(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 학술대회)
- 08.31 특별법 제정 협조 요청(이만희 의원실)
- 09.02 전라북도의회 의견청취 요청(전라북도의회)
- 09.14 안호영 의원 발의안 행안위 상정(행정안전위원회)

- 09.16 특별법 제정 건의 면담(민주당 당대표 및 원내대표)
- 09.20 특별법 제정 간담회(전북도-전북 국회의원)
- 09.21 전라북도의회 특별위원회 11명 선임(전라북도의회)
- 09.27 국회 출입기자 간담회(전북일보 등 6개사)
- 09.28 입법 정책 토론회(전라북도의회)
- 09.30 전라북도의회 건의한(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신속 처리)
- 09.28 입법 정책 토론회(전라북도의회)
- 10.07 특별법 제정 지원 건의(대통령)
- 10.18 전라북도의회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전라북도의회)
- 10.25 특별법 소관 행안위 여야 간사 면담(김교홍·이만희 간사)
- 10.26 전북 연고 국회의원 간담회
- 10.27 국회 안건 상정 건의 활동(전라북도의회)
- 10.18 특별법 안건 상정 건의(김용판 의원, 정우택 의원실)
- 11.06 연내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2022 JTBC 서울마라톤)
- 11.07 안건 상정 및 통과 건의(이채익 행안위 위원장)
- 11.08 안건 상정 방문 건의(김교홍·이만희 간사실)
- 11.09 특별법 추진상황 간담회(전라북도의회 기자단)
- 11.14 특별법 상정 및 통과 건의 (김교홍·송재호·이해식·조응천·정우택 등 11명 의원실)

- 11.28 국회 입법 공청회(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의·통과
- 12.0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통과
- 12.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계류
- 12.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의·통과
- 12.29 국회 본회의 심의·통과

법안심의 절차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특별법안 (정운천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전북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전라북도가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을 전북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낙후된 전북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북자치도의 책무) ①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전북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전북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전북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전북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전북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전북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전북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전북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전북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7조(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전북자치도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북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전북자치도의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편의 증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북자치도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전북자치도의 행정규제 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개정 등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은 각각 동수로 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전북자치도의 부지사 1명

3.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전북자치도의 관할 구역 내 시장 또는 군수 2명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
- ⑤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도시계획·개발 및 지방자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전북자치도의 발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⑥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둔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전북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북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북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또는 도의 조례·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자치도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13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조직 특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면적·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국가와 전북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전북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과와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제17조(전북자치도 발전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

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의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발전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사업 지원
2. 그 밖에 전북자치도의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북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

제19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21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2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 ⑤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0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일반직·특정직 국가·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2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장,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제1호 외에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전북자치도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의무)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와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원과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을 재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27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전북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전북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별법안 (한병도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전북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전라북도가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을 전북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낙후된 전북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북자치도의 책무) ①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전북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전북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전북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전북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전북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전북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전북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전북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전북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7조(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전북자치도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북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전북자치도의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편의 증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북자치도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전북자치도의 행정규제 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개정 등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 관련 사항
7.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은 각각 동수로 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전북자치도의 부지사 1명
3.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전북자치도의 관할 구역 내 시장 또는 군수 2명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
- ⑤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도시계획·개발 및 지방자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전북자치도의 발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⑥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둔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전북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북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보호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북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또는 도의 조례·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자치도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⑦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13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조직 특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면적·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국가와 전북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전북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제17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전북 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21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2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 ⑤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8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일반직·특정직 국가·지방공무원으로 한다.
-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0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장,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제1호 외에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전북자치도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23조(비밀유지의무)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와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원과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을 재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25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전북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전북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국회 본회의, 2022.12.27)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전북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전라북도가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을 전북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낙후된 전북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북자치도의 책무) ①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전북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전북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전북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전북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전북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

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7조(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북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북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또는 도의 조례·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자치도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

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11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전북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전북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전북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전북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국가와 전북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전북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제16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7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21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2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⑤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8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일반직·특정직 국가·지방공무원으로 한다.
-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0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장,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제1호 외에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전북자치도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23조(비밀유지의무)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전북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전북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사회협약) ①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된 사안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26조(해외협력) 전북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문화·교육·과학·기술·체육·환경·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교류할 수 있다.

제27조(국가공기업의 협조)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전북자치도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전라북도의 폐지) 종전의 전라북도를 폐지한다.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 법 시행 전 전라북도지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전라북도지사 및 도의회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전라북도도지사(전라북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라북도의회 의원은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전라북도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북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북도의 조례·규칙은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조

례·규칙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소속의 직원 및 위원이 된다. 다만, 임기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로 위촉·임명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의 사무와 전라북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그 소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전라북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여 온 재산, 기금, 금전 급부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승계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가 승계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관에 관하여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북도가 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도 조례로 보되 그 조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정책연구 2022-31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방안 연구: 특별법을 중심으로

발행인 | 권혁남

발행일 | 2022년 12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451-0 9535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2022년도 주요 연구과제

기본연구

전라북도 신산업 생태계 및 산업기술지도 분석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북지역경기지수개발 연구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도시 회복력 관점의 전라북도 주거지 특성 분석 연구
2022 전북형 행복지표 실태조사
전북형 젠더거버넌스 기본 구상 및 활성화 방안
전북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크리에이터 육성 방향
전라북도 스마트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기획연구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거리 생태·문화탐방로 조성방안
전북의 대중국 초광역협력 방안 연구
전라북도 주력산업 경쟁력 진단과 중장기 발전방향: 신재생에너지산업
새만금 대규모 테마파크 유치 구상 연구
전라북도의 대기업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탐색 연구

정책연구

전라북도 항만물류서비스 특성화 방안 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전략 및 지원방안 마련
전라북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 방안
전라북도 여건에 맞는 수계기금 지원 운영 개선방안 연구
전라북도 도시계획 심의 가이드라인 연구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지역기업 참여방안 연구
전라북도 인삼산업 육성정책 기본방안
전라북도 바이오화학산업 활성화 방안
전라북도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도화 계획 수립
전라북도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
전라북도 전기차충전소 보급 및 관리방안 연구
전라북도 자연환경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방안 연구
전라북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개선방안
전라북도 마을공동체 자립 역량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지방도매시장 농산물 유통혁신 전략화 방안 연구
전북여성인재 육성 및 활용방안 연구: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전라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방안 연구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전략 연구
전라북도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방안
전북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말쭈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